

정보화에서 디지털포용까지

디지털포용 30년사 : 법과 정책의 변화

—

디지털포용본부 디지털포용기획팀

황현주 책임



정보화에서 디지털포용까지

디지털포용 30년사 : 법과 정책의 변화

「Digital Inclusion Report」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가 가져온 디지털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모든 국민이 소외·배제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기획·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행일 | 2026. 4월

❑ 발행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발행인 | 김 형 철

❑ 기 획 | 디지털포용본부 최문실 본부장, 정기호 팀장

❑ 자 문 | 조용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배영 교수(포항공과대학교), 김현경 교수(광운대)

❑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 www.nia.or.kr

정보화에서 디지털포용까지

디지털포용 30년사 : 법과 정책의 변화

Contents

I	디지털포용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9
	1. 디지털포용 패러다임 변화와 중요성	9
	2. 세계에서 주목하는 디지털포용	11
	3. 디지털 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의 필요성	13
II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 변화	15
	1. 정보화 사회의 출발과 초기 정보격차의 등장	15
	2. IT강국 도약과 정보화 역기능 대응 정책의 전환	20
	3. 모든 사회 구성원을 아우르는 ‘디지털포용’ 등장	23
	[참고] 디지털포용 유사 법률 비교	29
III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 변화	33
	1. (1980년대~2000년대)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정보격차 해소의 태동기	33
	2. (2010년대) 디지털 역기능 대응과 건전한 이용문화 확립기	41
	3. (2020년대) 디지털포용 확산과 제도화	43
IV	종합 결론 및 시사점	47
V	디지털포용 법률 및 사업 연대기	50
	[참고] 법률 및 사업 연대기	50
	[참고] 「디지털포용법」까지의 법의 여정	52
	[참고]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 제·개정 이력	54
	[참고]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 제·개정 세부내용	56
VI	참고 문헌	60

I “디지털포용”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 **(개념)** 디지털포용은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접근성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서 출발해, 모든 사람이 디지털에 동등하게 접근·참여·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
- **(중요성)**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개인과 사회의 적응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디지털 배제와 격차가 심화되고 대상과 범위가 확대
- **(연구 배경)** 디지털이 생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정책 수요자가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환경 전반에 포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 확장 필요
- **(보고서 목적)** 본 보고서는 디지털포용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와 사업을 분석하여, 정책 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진단하고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개선 방향을 도출

I 보고서에서 살펴본 법률

법률	주요 내용	의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법률 제4969호, '95.8.4 제정, '96.1.1. 시행)	정보화시대 초기, 국가사회 정보화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 (6장 36조 구성)	종합적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보통신 서비스의 보편성과 정보격차 개념 초기 형성에 기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법률 제6356호, '01.1.16. 제정, '01.4.17. 시행)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최초의 단독 법률(15조 구성)	정보소외 계층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종합계획’ 수립,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설치, 정보통신기기 보급 등 격차해소 정책 본격화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9705호, '09.5.22. 전부개정, '09.8.23. 시행)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 발전 둔화와 인터넷 일상화에 대응해, 건전한 온라인 질서 확립을 위해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6장 51조 구성)	IT를 국가사회·산업 전반에 융합하고, 국가정보화의 근본적 방향 전환 모색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7344호, '20.6.9. 전부개정, '20.12.10. 시행)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지능화가 확산 되면서, AI·데이터 기반 산업체계 전환을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7장 70조 구성)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지능정보화 추진 체계와 정책 기반 전면 정비
「디지털포용법」 (법률 제20672호, '25.1.21. 제정, '26.1.22. 시행)	디지털 기술 혜택을 보편적 권리로 보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속에, ‘디지털포용’을 단독으로 다루는 개별법 첫 제정 (6장 37조 구성)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산업 및 기술의 사회적 확산 도모

※ 그 외 「디지털포용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비교·분석

I 키워드로 본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 및 사업

1980~1990년대 : 정보화 기반 구축 (키워드 : 인프라 확충, 정보화 촉진, 보편적 서비스 시작)

- 정보화 자체가 목표로, 국가기간전산망, 초고속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심이 되었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통해 국가적 정보화 확산의 법적 기반 마련
- 이때 등장한 주요 개념이 '정보통신서비스의 보편성'으로, 지역·경제적 격차 중심의 제한적인 개념이지만, 이후 '디지털포용'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출발점
- 다만, 디지털포용 관점에서 정책은 "정보화에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에 집중되었고, 이용 역량이나 사회적 영향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시기

2000년대 : 정보격차 해소의 제도화 (키워드 : 정보격차, 취약계층, 접근+역량, 2단계 격차)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보격차가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본격 등장하였으며, 단순 접근 격차를 넘어 활용 능력 격차(2단계 정보격차)까지 정책 범주 확장
- PC 보급, 통신요금 지원 사업으로 (정보화)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초적인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정책 대상별 역량 강화 추진과 '정보 소외계층'을 정의하여 정책 목표 대상을 구체화
-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포용 관점에서의 정책 구조는 국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후견적이고 시혜적 성격이 강하며, "누가 부족한가"를 기준으로 정책 설계

2010년대 : 정보화 역기능 대응 (키워드 : 인터넷 중독, 정보 윤리, 안전·신뢰, 규범 형성)

-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 중독 대응, 사이버 범죄, 정보윤리 교육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정보화 부작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
- 이 시대의 정책은 정보화 역기능 관리 중심의 접근으로 급격한 정보화 확산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역기능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

2020년대 : 디지털포용 확산 및 권리화 (키워드 : 디지털포용, 사회 구성원, 권리, 환경 설계)

-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을 거치며 정책 대상은 디지털 취약계층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되고, 접근 중심에서 역량·환경을 포괄한 권리 중심으로 전환
- 또한, 디지털포용 정책은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디지털 배제를 예방하는 사전 설계 중심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 발생

I 앞으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 **(권리 중심 정책 전환)** 신규 취약계층 등장에 대응하여 기존 장애인·고령자 등 특정 대상 중심 정책에서 전 국민 디지털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포용법」 제정은 대상 중심에서 권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방향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계기
 -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포용적 서비스 설계 기준,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기반 서비스 설계 등을 통해 기술 개발·도입 단계부터 포용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는 국가기관 등이 디지털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포용의 내재화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 사전 예방 체계 전환의 출발점
 - 다만, 공공조달 연계, 평가 결과 환류 체계 및 데이터 기반 점검 체계 등의 마련을 통해 디지털포용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의 정교한 설계 필요
 - **(민간·시장 참여 확대)** 다수의 디지털 기술·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제공되는 환경을 고려해,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협력 구조 구축 필요
 - 기존에는 디지털포용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인식되었으나, 향후에는 기업의 기술·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장과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정부는 제도·표준·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민간은 포용적 기술·서비스 개발과 적용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민간 협력 체계로의 전환 기대
 -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운영)**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추진 과정을 지속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구조 구축 필요
 -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 설계 및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체계 강화 필요
 -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 요인과 이용 행태, 포용 기술 및 서비스 확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과 점검 체계 구축 필요
 -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디지털 환경 변화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됨에 따라, 정책 지원 역시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 체계로 전환 필요
 - 이에 따라 기본계획·시행계획 중심의 주기적 정책 수립 체계와 함께, 기술 변화에 대응한 상시적 제도 개선, 시범사업 및 실증 기반 정책 보완 등 유연한 정책 운영 체계 구축 필요
 -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정책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기반의 강화 필요
- ※ 법적 근거 : 「디지털포용법」 제13조(전문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지정('26.3.17.)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법·정책	●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 ('96.1.1.)				● 1000만 명 정보화교육추진계획 수립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 ('01.4.17.)
지원사업		●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 시작	● 주민 컴퓨터 교실 운영 ● 여성 정보화 교육 실시 ● 군장병 정보화교육 실시	● 우체국 정보화교육 실시 ●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시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시작	● 중소기업인·어업인·농업인·교육·장애인 등에게 정보화 교육 실시('배움나라') ●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시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법·정책	● 국민정보화교육 실시	●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전국 확대 실시 ● 노인·장애인·주부 등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실시(52만명) ● 북한 이탈주민 대상 IT전문교육 실시	● IT기반 중소기업 기업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 개발 지원	● 107 손말이음센터 개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RS) 시범서비스 실시)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국가 표준 제정		● 정보통신부, 어린이용 윤리 교과서 보급
지원사업	●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시작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시작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법·정책	● 정부조직 개편 (정보통신부 폐지, 정보화 관련 업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리 이관)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09.8.23.)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 개정)				
지원사업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제정	●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개소 ● 인터넷 중독방지 '그린인터넷' 인증제 도입	●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시작	● 웹 접근성 국가표준을 준수한 우수 웹 사이트 대상 품질인증마크 부여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정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2.1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 ● '디지털포용 추진계획' 의결		● 접근성 보장 우선구매제도 시행	●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지원사업	●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시작	● 제1회 '한국코드페어'(청소년 소프트웨어 행사) 실시	● '디지털배움터' 운영	● 디지털 역기능 대응 통합안내시스템 서비스(gooddigital.or.kr) 개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윤리교육 콘텐츠 개발('21년 14종)	● '디지털 활용 현안 해결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배움터 교육 콘텐츠 개발 (수준·계층·역량별 특성 고려)	●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소사이어티' 신설(사회적 담론 형성)
연도	2024	2025	2026			
법·정책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발표		● 「디지털포용법」 시행 ('26.1.22.)			
지원사업	● AI·디지털 규범 공동연구 ●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 디지털포용 제품·서비스 실증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센터 운영(신속한 검증 지원) ● 국민 AI기본역량 체계 마련	● 디지털포용 산업 체계 마련,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추진 ● AI 디지털배움터 운영			

출처 : 국가지능정보화백서(1993~2024)를 바탕으로 저자 추가·가공

디지털포용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1 디지털포용 패러다임 변화와 중요성

“디지털포용”이란 무엇인가?

- **(개념)** 디지털포용(Digital Inclusion)은 1990년 중반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 노력에서 출발해, 사회·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
 - **(사회 변화)**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온라인 중심의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모바일·디지털 중심으로 사회 시스템이 크게 변화
 - **(기술 변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상용화에 따라 디지털 활용 역량, 보안, 윤리 등 사회적 이슈 다변화
 - **(정책 변화)**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격차 심화, 디지털 권리 보장 논의 확대 등 새로운 위험과 이슈 등장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제도 필요성 증대
 - ▶ 따라서, 오늘날 디지털포용은 단순히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넘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디지털 제품·서비스에 접근하고, 안전하게 참여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
- **(핵심 요소)** 디지털포용의 핵심 요소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접근성’, 디지털 ‘경제성’, 디지털 ‘역량 및 활용 능력’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
 - **(접근성)** 디지털 접근성(Digital accessibility)은 디지털 자원이나 기기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는지 의미
 - ※ 예시) 디지털 기기(PC, 노트북,패드, 스마트폰 등) 보유 여부,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등
 - **(경제성)** 디지털 경제성(Digital affordability)은 디지털 환경을 누리기 위한 서비스·기기 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호주 등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이 높은 해외에서 주로 언급
 - ※ 예시) 광대역망 서비스 비용,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용
 - **(역량)**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으로 언급되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정보 탐색·평가, 생활에서의 활용 등 전통적 문해력에서 확장된 개념
 - ※ 예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정보 평가와 이해, 콘텐츠 생산과 공유, 경제·사회적 활용 등

I 디지털포용은 왜 중요한가?

-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개인과 사회의 적응력은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디지털 사회에서의 배제와 격차 현상이 점차 심화되며, 격차 대상과 범위가 확장
 - **(기술 고도화)** AI를 비롯한 최근 디지털 기술이 고도의 자동·자율화 됨에 따라, 단순히 기기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응용, 활용, 비판할 수 있는 종합적 관점의 필요성 증대
 - **(기술 일상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술의 배제는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소외를 가져오며 경제·생존·이동·정보접근권 등 일상 전반의 권리를 침해

〈표 1〉 사회 분야별 디지털 격차 주요 사례

〈금융〉	〈교통〉	〈의료〉	〈공공서비스〉
• 온·오프라인 금리 차등 (온라인 가입 금리 우대) • 수수료·포인트 등 혜택 활용의 차이 등	•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활용의 어려움 • 기차버스 등 온라인 예매의 어려움 • 지도 앱 활용 격차 등	• 병원 온라인 예약 한계 • 원격 의료 서비스 접근 차이 • 건강앱 사용 저조에 따른 건강정보 이해·활용 격차	• 전자 민원 활용 격차 • 복지 수급 신청 격차 • 치안·교통·재난 관련 모바일 알림 확인 한계 등
〈문화〉	〈교육〉	〈소비·상거래〉	〈일자리·고용〉
• OTT·대중문화 플랫폼 접근성 격차 • 스포츠·영화 등 공연장 온라인 예매 격차 등	• 디지털 인프라·보조자료 접근 격차 • 온라인 강좌 활용에 따른 고급 학습 기회 차이 등	• 온·오프라인 할인율 차이 • 간편결제·온라인 전용 혜택 활용 격차 등	• 온라인 구직, 원격근무, 재교육 참여 격차 등

자료 : 국내 기사를 참고·종합하여 저자 작성

- **(디지털 취약계층 확대)** 기술이 복잡·다양해지고 디지털 기기의 전반적 확산으로 과거 디지털 취약계층을 결정하던 전통적인 요소(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 외에 다양한 요인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주 확대

〈표 2〉 新디지털 격차 요인과 주요 대상

요인	(예시) 주요 대상	주요 위험 요인
적응력	중장년 사무직, 행정직	• AI 도구 적응의 어려움 • 업무 방식 변화에 대한 심리적·기술적 장벽
업무 특성	현장·수작업 노동자	• AI 기술 대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술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 존재 • 보조 기술 도입이 필요하지만, 접근 기회 부족
고용 구조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존하여, AI에 의한 수익 구조 변경 가능성 존재 • 알고리즘 불투명성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성 확대
교육/문해력	교육소의 아동, 저학력 성인	• AI 기반 학습 도구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 저하 • 사교육에서의 AI 학습 도구 증가로 인한 격차 확대 • 기기 활용은 가능하나 서비스 활용의 한계 존재
사회문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 한국어 중심의 AI 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 존재(언어장벽) • AI 데이터 편향에 따른 배제 우려

자료 : 저자 작성

2 세계에서 주목하는 디지털포용

I 글로벌 주요국은 디지털포용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경제 활력 도모

- **(실질적 실행 기반 마련)** 202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디지털포용은 선언적인 목표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구체적인 지침·표준을 제시하는 단계로 발전
 - **(2010년도 중후반)** 디지털포용이 접근성 보장, 역량 강화, 신기술 확산에 따른 정책 다변화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적 합의를 통해 사회 통합 의제로 자리 잡은 시기
 - **(2020년대 이후)** 법·제도, 민·관 협력, 표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디지털 사회 안전망이자, 인권 보장 장치의 기능으로 인식

〈표 3〉 디지털포용 관련 글로벌 정책

국가	정책·보고서 명 (발표 시기)	주요 내용
영국	디지털포용 액션플랜 (Digital Inclusion Action Plan: First Steps) (‘25.2월)	• ‘디지털 배제’ 해소를 정부 핵심과제로 선포하고 부처 연계 실행의 첫 단계 발표(과학기술부(DSIT) 주도) • 정책 일환으로 95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기술 기반 기회 창출, 서비스 장벽 해소, 데이터·기기 격차 해소에 활용
호주	디지털포용 표준 (Digital Inclusion Standard) (‘24년)	• 정부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포용성과 접근성을 구축하고 국민의 디지털 경험 개선을 위한 일련의 표준 및 실질적 지침을 제시 • 대상이 되는 신규 정부 서비스는 ‘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포용 표준을 의무화 (기존 대국민 서비스는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대상) 연방정부(예. 부처, 청) 제공 서비스, 정보제공(예. 정부 안내 웹 사이트 등), 거래·서비스(예. 온라인 신청서, 세금납부 등), 신규·기존 대국민 대상 서비스, 신규 내부 직원용 서비스
싱가포르	삶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Digital for Life(DfL)) (‘21년~)	• 국가 차원의 디지털포용 운동으로 기업, 지역, 사회단체, 정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역량 향상 등을 지원 • ‘DfL펀드’는 정부에서 기부금 1달러당 1달러를 매칭하여 지원하며, 해당 펀드로 DfL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상시 지원
EU	2030 디지털 목표 (Digital Compass 2030) (‘21년~)	• EU집행위원회는 기후 중립적이며 순환 및 회복력 있는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기술·역량·인프라 향상을 제안 •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시민 및 전문가 양성,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목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Going Digital (‘17.1월~)	• 정책결정자의 디지털 전환 이해를 높이고, 포용적 디지털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행 지원을 위해 ‘Going Digital’ 프로젝트 개시 • 범정부 디지털 정책 수립을 위한 통합 정책 프레임워크의 7가지 정책 고려사항 중 디지털 격차 완화, 디지털 위험관리 등을 언급

자료 : 국가별 사이트를 참고·종합하여 저자 작성

- **(경제적 중요성 확대)** 디지털포용의 의미는 단순한 사회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이끄는 동력인 동시에, 모두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요인으로 기대
 - AI·디지털이 일상화된 시대에 디지털 기기 접근이나 활용, 관련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개인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
 - ※ 예시) 디지털 금융이 익숙하지 않아 보이스피싱이 확대될 때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비용 증가
 - 따라서, 개인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일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경제적 인식으로까지 확장
 - 호주 비영리 단체 ‘굿띵스재단(Good Things Australia)’에 따르면 국가의 적절한 디지털 교육과 재정 지원이 제공될 경우 연간 최소 약 5억 호주달러(약 4,196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표 4〉 디지털 격차 해소 대응에 따른 혜택

성과	성과 요인	연간 가치 백만 AUD
고용 촉진	• 디지털 기술은 고용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 • 대부분의 직무(87%)가 디지털 기술을 요구하며, 디지털 고용 플랫폼을 통해 관련 직무를 탐색할 가능성 향상 * 56% 직무가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 25%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시	9.4 (약 84억 원)
직업 전환	•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기초·고급 디지털 역량 부족이 이슈 • 디지털 역량 향상은 경력 발전과 임금 상승의 가능성을 높임	65.1 (약 585억 원)
자원봉사 활동 참여	• 봉사활동도 점점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며, 봉사 플랫폼을 통한 기회 탐색이나 온라인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 * 2022년 기준, 30.2%가 온라인 봉사활동에 참여	70.7 (약 635억 원)
사회적 배제 감소	•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연계를 높이는데 도움 • 소셜미디어를 통해 먼 거리에 사는 친구, 가족과 연락을 유지함으로써 외로움과 고립감 감소 가능	25.7 (약 231억 원)
원격 의료 활용 (시간 절약)	• 원격 의료는 환자의 시간을 절약해주며, 의사의 근무 효율을 높여 하루에 더 많은 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	205.7 (약 1,848억 원)
myGov 접근 (시간 전략)	• 호주 정부통합플랫폼(myGov)은 세무, 의료정보, 재해보상금, 건강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여, 대면·전화 상담에 대비 상당한 시간 절약 가능	41.4 (약 372억 원)
온라인 소매 서비스 이용	• 온라인 구매 비중과 온라인 상점 수가 증가하면서 선택권과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온라인 구매 가구의 구매력 향상	20.7 (약 186억 원)
금융 안전성 향상	• 온라인 위험 대응 역량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필수 요소로, 사기·피싱 피해(인구의 8%)를 줄이는데 기여	28.5 (약 256억 원)
연간 총 혜택	4억 6,700만 호주달러 (약 4,196억 원)	

자료 : Good Things Australia('24.10), The Economic Benefits of Overcoming Digital Exclusion

3 디지털 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의 필요성

I 연구 배경 : 국내 디지털포용 정책 환경 변화

● 디지털·AI 일상화 시대와 정책 대상의 확대

- AI, 플랫폼, 무인서비스 확대 등으로 디지털이 생활 필수 인프라가 되면서,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정보 접근을 넘어 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위험 대응의 한계 등 새로운 형태의 소외와 격차를 유발
- 이에 따라 개인의 디지털 역량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책 이슈였으나, 과거에는 특정 영역·계층에 한정된 반면 AI 일상화로 ‘모두’가 정책 수요자로 확대되며 새로운 방식의 정책 대응 필요

● 디지털포용 정책 범위 확대 필요성 대두

-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이용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디지털이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디지털 환경 전반에 포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 확대 필요
- 단순한 격차 해소를 넘어 디지털 접근·이용·참여 전반을 포괄하고, 디지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 대응까지 포함하는 정책으로의 확장 요구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 구조 변화와 정책의 보편성 확대 요구

- AI 확산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디지털 격차를 야기하는 전통적인 기준(연령, 지역 등)을 변화시키며, 디지털 격차 양상이 보다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추세
-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에도 불구하고 활용 수준과 서비스 이용 범위에 따라 개인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혜택이 크게 달라지며, 모두가 디지털 기술로부터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에 대한 요구 증대

〈표 5〉 디지털 격차를 일으키는 기준의 변화

전통적 취약계층		신 취약계층	
구분 기준	우려 사항	구분 기준	우려 사항
→ 접근 여건 중심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활용 역량과 자원 기반 요인	
연령	1. 접근성 제한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자체의 어려움 존재	연령	1. 무료 서비스 중심의 제한적 이용
장애 유무	2. 기기·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장애 유무	2. AI리터러시 부족
지역	3.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 존재	학력	3. 비공식적 학습 자원 의존
성별	→ (실질적·직접적 격차) 일상·사회생활의 어려움 발생	경제적 여유	→ (간접적·증장기적 격차) 사회·경제적 성과 하락 우려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25.11.), '생성형 AI활용 격차와 AI 리터러시' 저자 가공 및 수정

I 보고서 추진 목적

● 디지털포용 정책 패러다임 변화 과정 분석

- 초기 정보화 정책은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접근성 확대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정보격차 해소 정책으로 정책 범위가 점차 확대
-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정책의 초점이 '정보격차 해소'에서 '디지털포용'으로 정책 패러다임 확장
- 이러한 정책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정책 발전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디지털포용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 범위 정립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디지털 기술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 구조 분석

- 새로운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술 접근 및 활용 능력 차이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는 과거 정보화 시대와 현재 AI전환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발생
- 이용 역량,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는 현재까지 지속됨에 따라 격차 구조 특성 분석에 따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지원 방안 마련

●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추진 체계 분석

- 우리나라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5년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접근과 이용, 참여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의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관련 법·제도 및 사업 추진 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정책 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검토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체계로의 개선 방향과 보완 과제 도출

● AI시대 전환에 대응한 디지털포용 정책 대응 방향 도출

-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AI 중심의 기술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정보화 및 디지털 정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 필요성 확대
- 과거 정보화에서 디지털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법·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정책 환경을 고려한 대응 방향 모색 필요

→ 이에 본 보고서는 「정보화촉진 기본법」(‘96.1.1 시행)부터 「디지털포용법」(‘26.1.22 시행)까지의 법·제도 및 관련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함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 변화

1 정보화 사회의 출발과 초기 정보격차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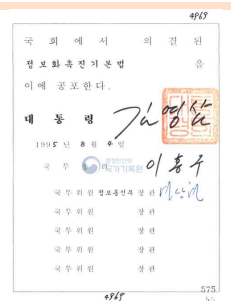


「정보화촉진 기본법」(법률 제4,969호, '95.8.4. 제정, '96년 1.1. 시행)

정보화시대 초기, 국가사회 정보화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 (6장 36조 구성)

→ 종합적인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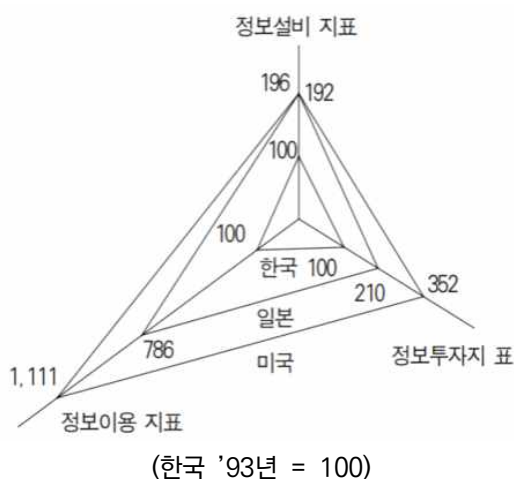
정보통신 서비스의 보편성과 정보격차 개념 초기 형성에 기여



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배경) 1980년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공공·산업 분야 통신망 확산 등 정보 설비 구축*이 중점 추진되었으며, 정보화 사회 초기 단계부터 정보 이용·활용 격차 발생
 - * 국가기간전산망 구축('87~'92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94~'15년)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및 사회 간접자본(SOC) 전산망 등 구축
- 1980년대부터 약 10여년간 정보화 기반 구축에 집중하며, 정보(기술) 이용 및 활용에 대한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정보 인프라·기기의 보편적 확산에 힘쓰는 시기

〈표 6〉 '93년 부문별 국가정보화 지표- “정보이용” 부문에서 가장 큰 격차 발생



- (종합) '93년 정보화 지수*에서 미국은 한국의 7배, 일본과 유럽은 한국의 약 5배 높은 결과를 보임
 - * '정보 설비', '정보이용', '정보 투자'로 구성
 - '정보설비' 부문은 한국(100)과 선진국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는데 반해,
 - ※ (정보설비) 미국, 192, 일본 186, 프랑스, 151
 - '정보투자' 부문은 상대적 격차가 크며,
 - ※ (정보투자) 미국 352, 영국 379, 프랑스 255
 - ※ (정보이용) 미국 1,111, 일본 786, 독일 747

출처 :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I '정보화'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

- **(목적)**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기반 고도화를 통한 국민 경제 발전 이바지'를 위해 수립되었으며,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가 주요 목적
 - 동시에 정보화의 진전은 산업화 시대의 부(富)의 편중 문제처럼 정보 독점과 불균형의 우려를 낳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반영¹⁾
- **(포용적 관점)** 디지털포용 개념의 시초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보편성(Universal service), 건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의 국민 확산 등을 명문화
 - 정보화의 진전으로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부(富)의 편중 문제와 유사하게, 정보의 독점이나 불균형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우려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 필요성 반영²⁾
 - 산업사회에서 공산품 소비에 관한 권리 보장이 강조되었다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격차 해소 등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여 법률 제정

〈표 7〉 「정보화촉진 기본법」(’96년 1월 시행) 내 디지털포용 관련 조문

〈정보통신서비스의 보편성 (지역·경제적 차별)〉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의무 제공**
5. ~ 6. (생략)

〈정보문화 확산 교육 추진〉

제12조(정보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확대**등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역기능을 막기 위한 교육 추진〉

제16조(이용자의 권익보호등) ①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기타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② (생략)

〈정보통신 교육 추진〉

제20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2) 강성주, 「정보화촉진기본법 입법배경 및 해설(상)」, 정보화사회 제94권, '95.1, p.29-39

1. 각급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교육의 지원
2.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정보통신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기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화촉진 기본법」

I 개정을 통해 정보(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확대

- **(배경)** 기존 「정보화촉진 기본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의 보편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역적·경제적 차별만을 고려한 제한적 개념에 머물렀다는 한계 존재
- **(개정 사항)** 정보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범위를 지역·경제에서 신체적 차별까지 확대하고(제16조의2), 정보통신윤리 확립(제12조의2)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정보화 촉진 사업에 명문화(제34조)

〈표 8〉 「정보화촉진 기본법」 개정 ('99년 7월 시행) 內 디지털포용 관련 조문

〈정보통신윤리 확립 명문화〉

제12조의 2(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정부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한 요건 (지역·경제·신체적 차별) 확대〉

제16조의2(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자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요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 및 정보이용능력의 개발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정보화 촉진 지원〉

제34조(기금의 재원과 용도) ② 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2. 공공·지역·산업·생활·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화촉진 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6,356호, '01.1.16. 제정, '01.4.17. 시행)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최초의 단독 법률** (15조 구성)

→ 정보소외 계층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종합계획 수립,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설치, 정보통신기기 보급, 교육 지원 등 **격차해소 정책 본격화**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사회적 관심 증대

- **(정책적 배경)** 2000년대 정보화 정책 기본 방향인 '21세기 10대 정보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국가적으로 정보화 교육 확대, 정보화 역기능 방지, 계층 간 정보격차 시정 등의 과제 추진
 - ※ 제5차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 역기능을 강조하며, 정보화의 발전과 함께 역기능을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³⁾
- **(사회적 배경)** 성별·학력·직업·연령에서는 활용 능력에 따른 격차가 크고, 소득에 따라서는 여전히 '컴퓨터 보유율' 같은 인프라 측면의 접근성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종합적 정보화 격차 발생
 - 장애인의 휴대폰, 컴퓨터 등 인프라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률도 여전히 일반인보다 매우 낮은 상황
 - ※ (휴대폰 보유) 장애 30.1%, 일반 71.9%, (컴퓨터 보유) 장애 11%, 일반 50.4%, (인터넷 활용) 장애 6.9%, 일반 37.1%

〈표 9〉 집단별 컴퓨터 보유, 인터넷 가입, 인터넷 이용률 격차

(단위 : % (괄호 : %p))

구분		컴퓨터 보유	인터넷 가입률	인터넷 이용률	사례 수
성별	남자	67.8	42.8	45.1	1,522
	여자	64.1(3.7)	35.5(7.3)	28.8(16.3)	1,478
학력	중졸 이하	46.3(34.4)	16.3(46.5)	1.9(60.5)	473
	대학졸 이상	80.7	62.8	62.4	543
직업	가정주부	59.1	25.3	11	580
	농·임·어업	45.1(40.8)	19.5(54.6)	7.3(86.8)	82
	대학생	85.9	74.1	94.1	170
나이	50세 이상	51.2(26.3)	19.8(38.2)	4.9(68.4)	510
	10대	77.5	58	73.3	457
소득	1백만원 미만	36.1(43.4)	20.7(41.8)	24.5(28.9)	241
	4백만원 이상	79.5	62.5	53.4	88
지역	대도시	69.1	43.4	39.4	1,471
	읍·면지역	58.4(10.7)	28.6(14.8)	31.5(7.9)	346
전체		66	39.2	37.1	3,000

출처 : 한국전산원, 2001 국가정보화백서 가공

3) KBS 뉴스('20.7.), 김대통령, 정보화 역기능 해결해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9681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최초의 단독 법률 제정

- **(목적)**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지역·신체·사회적 여건으로 정보 이용에 있어 취약한 자들에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
 - **(정보격차 요건 확장)** 과거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규정하던 ‘경제·지역·신체적’ 요건에 더하여, ‘사회적 여건’까지 포함해 다양한 여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고려
- **(포용적 관점)**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격차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최초의 단독 법률로써 부처별 개별 추진하던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보격차·정보소외계층 정의)** ‘정보격차’와 ‘정보소외계층’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
 - ※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함께 정의
 - **(컨트롤타워 마련)** ‘정보격차위원회’를 수립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과 사업 조정 기능 확보

〈표 10〉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내 디지털포용 관련 조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2. 30.〉

1.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2. ~ 4. (생략)
5. “정보소외계층”이라 함은 정보격차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6. (생략)

- **(정부의 역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제3조, 제4조, 제5조), ▲서비스 및 통신망의 보편적 이용을 위한 시책 마련(제7조, 제7조의2), ▲재정적·기술적 지원(제8조), ▲정보통신기기 지원(제9조),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제11조) 등을 명문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역할)** 정보격차 해소의 의무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노력 의무 형태로 부여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보격차 해소에 참여하도록 법적 명시

〈표 1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내 디지털포용 관련 조문

제7조(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개정 2005.12.30.>)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3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 IT강국 도약과 정보화 역기능 대응 정책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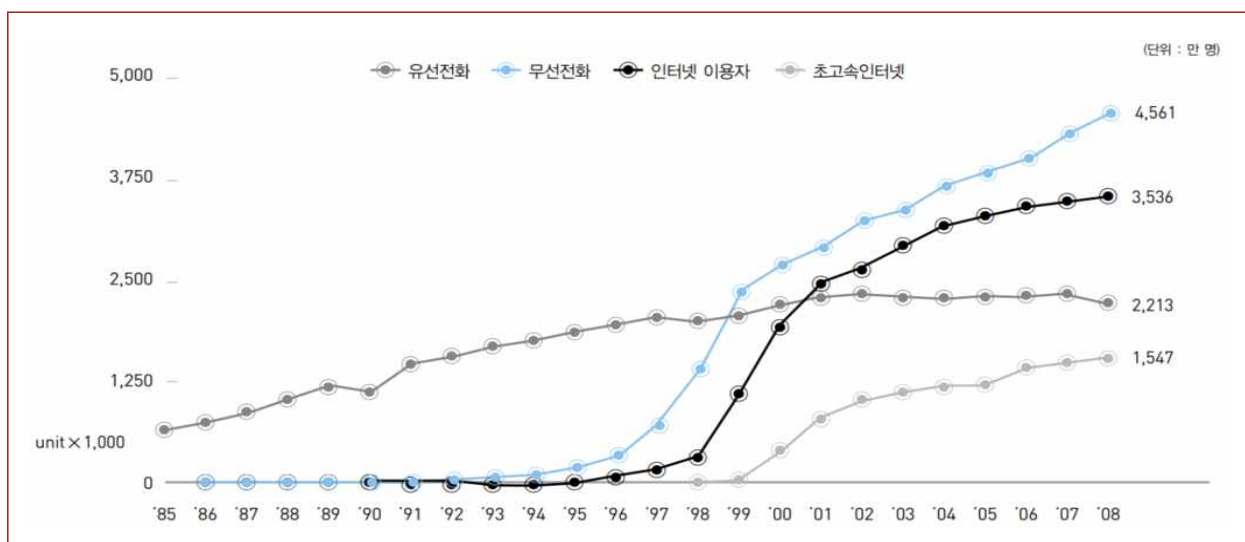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9,705호, '09.5.22. 전부개정, '09.8.23. 시행)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 발전이 둔화되면서,
정보화 활용 확대와 인터넷 일상화에 따른 **건전한 온라인 질서 확립**을 위해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6장 51조 구성)
→ IT를 국가사회·산업 전반에 융합하고, 국가정보화의 근본적 방향 전환 모색

국가정보화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요구 증대

- **(배경)** 2008년 2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고, 사회적 문제로 인한 인터넷 인식 변화와 정보화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정보화 전략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 증대
 - **(인터넷 인식 변화)** 광우병 촛불시위와 자살사이트 확산* 등의 사회적 이슈를 계기로 인터넷의 영향력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정보기술의 올바른 활용과 인터넷 질서 확립의 중요성 부각
 - * 자살 유해사이트 신고 건수 : ('07년) 480건 → ('08년) 849건 (한국자살예방협회, '09년)
 - **(정보화 성장률 둔화)** 초고속 인터넷을 뒤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어, 정보화 전략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 증대
 - ▶ 지식과 정보 중심의 실질적·활용적 '지식정보화'로의 질적 변화의 시점에 직면하였다는 공감대 형성
 - **(정부 조직 개편)** 정보화를 범국가적 체계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新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기존 IT 기능과 법률을 관계 부처(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그림 1〉 한국 정보 인프라 발전 현황 … 2000년 중반 이후 성장률 둔화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국가정보화백서

I '정보화 역기능 방지',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축으로 반영

- **(추진 경과)**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추진의 근간이 되었던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전부(전면) 개정되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국회 통과 ('09.4.30. 국회 본회의 가결)
 -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법」 등을 통합 정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추진하였으며, 기존 정보통신부 소관이었던 '정보격차해소'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
- **(목적)**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
- **(포용적 관점)** 제4장(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서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1절(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과 제2절(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로 구성되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과 주요 시책을 그대로 이관
 - 추가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 정보격차해소제품의 우선구매 규정을 신설(제30조)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또한, 인터넷 보편화로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인터넷 중독의 국가적 대응 의무 부과

〈표 12〉 「국가정보화 기본법」 ('09년 8월 시행) 內 디지털포용 관련 신설 조문

〈인터넷 중독 대응〉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하 "인터넷 중독"이라 한다)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보장〉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접근성 보장 범위 확대)** 2018년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인터넷에서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망 전체의 접근성 보장(제32조)
 - 정보 접근성의 대상이 기존 웹 서비스에서 단말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되어, 스마트폰 앱, ATM 기기, 기차표 예매 단말기 등 모든 정보단말기에서 장애인·고령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제32조제1항)
 -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장애인이 별도의 보조기기 없이 정보통신 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이 보조기기와 호환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추가(제32조제3항)

〈표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 '18.2.21., 시행 '19.12.10.〉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강화〉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자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④ ~ ⑤ (생략)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화 기본법」

- **(모바일 앱 품질인증 시작)** 또한, 민간 기관에 위임해 수행하던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모든 정보통신 접근성으로 확대하여, 단말기 소프트웨어(앱)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제32조의2)
- **(개정을 통한 인터넷 중독 대응 강화)** 2000년대 후반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제30조의6(인터넷 중독대응센터),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개정
 - **(과의존 교육 의무화)** 2014년,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의무화
 - **(대상/빈도 확대)** 체계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실시 횟수를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

3 모든 사회 구성원을 아우르는 ‘디지털포용’ 등장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20.6.9. 전부개정, '20.12.10. 시행)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지능화 혁신 요구가 커지면서,
AI·데이터 기반의 산업체제로 전환을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7장 70조 구성)

→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지능정보화 추진 체계와 정책 기반 전면 정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 필요

-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융합,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성의 획기적인 제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자리 대체, 지능정보기술의 신뢰성과 보안 문제 등 범국가적 이슈 제기
 - * 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로 생산성이 크게 제고되고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혁신으로, 지능정보기술이 그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인
- **(범용 기술 등장)** 인공지능(AI), 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과 혁신을 촉발하는 범용기술로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총 경제적 효과(신규매출 + 비용절감 + 소비자 후생증대)가 2030년 기준 최소 225조 원, 최대 460조 원 발생 예상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16년)
- **(정보화와 지능정보화의 차이)** '지능정보화'는 지능정보기술을 사회 각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보화'와 구분
- **(정책 지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12)',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

〈그림 2〉 지능정보기술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12.27.)

I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추진 경과)** 25년간 이어지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제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대응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와 기술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지능정보화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대응, 지능정보서비스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기술의 지원 및 활성화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내용 반영
- **(목적)**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
- **(포용적 관점)**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에서 정보격차해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기본 원칙과 주요 시책 이관
 - **(사회 역기능 대응)** 국가 차원의 AI 윤리 준칙 마련, 일자리·교육·복지 등 대책 마련을 신규로 규정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반영
 - 또한, 2010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된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뿐 아니라 지능정보기술 기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 부작용까지 포괄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하여 반영

〈표 14〉 「지능정보화 기본법」 〈'20.12.10. 시행〉

제55조(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대응)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의 경제적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 및 불평등 해소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양극화 등 고용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 체계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증진)** 2000년대 초 국내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도입된 이후 급속히 확산되면서,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이들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 의무화 ('24.3.26. 일부개정, '25.3.27. 시행)
 - *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의 이용이 불가하고, 기기별 상이한 UI/UX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활용 어려움 초래
 - **(접근성 보장 대상 확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이용 보장 의무가 적용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접근성 보장 대상을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 ※ (접근성 보장 대상) (기존) 웹사이트, 모바일 앱 + (추가)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등

〈표 15〉 「지능정보화 기본법」 〈'24.3.26, 일부개정, '25.3.27. 시행〉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
- ② ~ ⑦ (생략)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 **(설치·운영자의 편의 제공 의무 규정)** 이용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매장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공해야 할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
 - * 관련 의무 위반 시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시행령으로 세부 조치 규정)**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필요

〈표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4.3.26., 일부개정, '25.3.27. 시행〉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 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예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각자의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등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예시. QR코드, 근거리 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등 제공)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5.3.26.)



「디지털포용법」(법률 제20,672호, '25.1.21. 제정, '26.1.22. 시행)

디지털 기술 혜택을 보편적 권리로 보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속에,
‘디지털포용’을 단독으로 다루는 개별법 첫 제정 (6장 37조 구성)

→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산업·기술의 사회적 확산 도모

디지털 혜택을 보편적 권리로 마련하기 위한 환경 조성

- **(배경)**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정체되며 격차 해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AI 기술의 내재화로 디지털 문제는 사회·제도적 환경 차원에서 포용성을 확보해야 할 과제로 전환
-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지속)** 최근 7년간 전 계층·부문의 정보화 수준은 지속 상승해 왔으나, '22년 이후 상승 폭이 점차 둔화되어 '21년부터 '24년까지는 2.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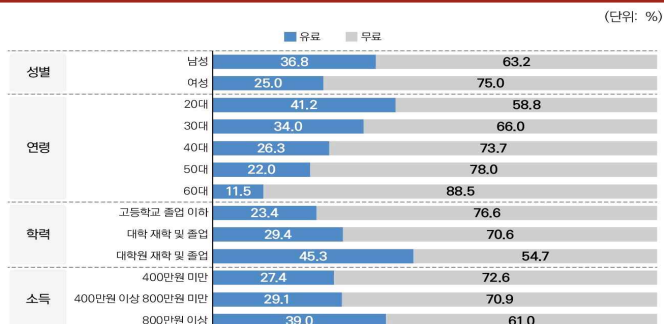
〈표 17〉 '18~'24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추이

부문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근	장애인	92.0	92.6 (+0.6)	95.4 (+2.8)	95.6 (+0.2)	96.7 (+1.1)	98.0 (+1.3)	98.1 (+0.1)
	고령층	90.1	90.6 (+0.5)	92.8 (+2.2)	93.1 (+0.3)	95.1 (+2)	95.3 (+0.2)	95.3 (+0)
	저소득층	94.9	95.2 (+0.3)	98.3 (+3.1)	98.7 (+0.4)	99.5 (+0.8)	99.6 (+0.1)	99.8 (+0.2)
	농어민	91.0	91.3 (+0.3)	94.8 (+3.5)	94.9 (+0.1)	95.7 (+0.8)	97.0 (+1.3)	97.0 (+0)
역량	장애인	66.9	67.8 (+0.9)	74.2 (+6.4)	74.9 (+0.7)	75.2 (+0.3)	75.6 (+0.4)	76.1 (+0.5)
	고령층	50.0	51.6 (+1.6)	53.7 (+2.1)	53.9 (+0.2)	54.5 (+0.6)	55.3 (+0.8)	55.9 (+0.6)
	저소득층	85.3	86.5 (+1.2)	92.5 (+6)	92.9 (+0.4)	92.9 (+0)	93.0 (+0.1)	93.3 (+0.3)
	농어민	63.0	63.6 (+0.6)	69.0 (+5.4)	69.6 (+0.6)	70.6 (+1)	71.0 (+0.4)	71.8 (+0.8)
활용	장애인	73.6	74.0 (+0.4)	81.4 (+7.4)	81.5 (+0.1)	82.0 (+0.5)	82.5 (+0.5)	83.7 (+1.2)
	고령층	62.8	63.9 (+1.1)	71.4 (+7.5)	72.3 (+0.9)	72.6 (+0.3)	73.8 (+1.2)	75.0 (+1.2)
	저소득층	84.3	85.4 (+1.1)	96.1 (+10.7)	96.3 (+0.2)	96.4 (+0.1)	97.4 (+1)	98.0 (+0.6)
	농어민	65.9	67.2 (+1.3)	76.9 (+9.7)	78.1 (+1.2)	78.8 (+0.7)	79.2 (+0.4)	79.6 (+0.4)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18~'24) 가공

- **(배제의 구조화)**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균등하게 향유되기 어려우며, 교육, 노동, 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환경 설계에 따라 포용과 배제가 구조적으로 발생

〈그림 3〉 생성형 AI 유료 구독 집단 간 비교



→ 생성형 AI 활용에서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져, 젊고 고학력 집단일수록 서비스와 기능을 폭넓고 깊이 있게 활용하는 한편, 경제적 여유는 AI 고급 기능(유료 구독) 접근에 영향을 미침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25.9), 생성형 AI 활용 격차와 AI 리터러시

I 모든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포용 보장

- **(추진 경과)** 디지털포용은 그간 개별법 없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정책 추진의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보완을 위해 디지털포용을 중심 의제로 한 개별법 제정
 -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이어지는 연혁적 계승 과정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 향상 및 정보 활용 능력 제고 등 디지털포용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포함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에서는 전통적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언급되는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 일부 디지털 기기 이용 편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규정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노인복지법」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목적)** 「디지털포용법」은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포용 실현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디지털포용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
- **(포용적 관점)**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포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환경 보장과 디지털포용 산업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정책 추진 체계 확립
- **(정책 추진 체계 확립)** 디지털 취약계층을 넘어 ‘사회 모든 구성원’을 법률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계획 및 시책 수립 의무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 **(대체수단 마련)** 지능정보제품·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을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추진)** 국가·지자체가 지능정보제품·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관련 계획 및 사업 추진 시 모든 사용자를 차별과 배제 없이 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절차 도입

〈표 18〉 「디지털포용법」(’26.1.22. 시행)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지털포용법」

- **(디지털역량 함양 지원)**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센터’ 및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표준교재 개발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원 체계 마련
 -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지역 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 수행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 ※ 디지털역량 교육은 필요한 지능정보기술·서비스를 탐색·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기술 이용에 대한 태도 형성, 역기능 대응, 지능정보사회의 능동적 참여 등 고도화된 역량까지 포괄
 -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지정)**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조사하고, 교육 전문인력을 발굴하며,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디지털역량 교육 지원 기반 마련
- **(디지털포용 산업 활성화)** 기업·시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과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며 디지털포용 분야에서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
 - **(유망 기술·서비스 지정)** 디지털포용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및 기술, 서비스 등을 지정하고 사업화와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디지털포용 이용 환경 보장)**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히 확대된 무인정보단말기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와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기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의 접근성 확보 의무에 더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정당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무인정보단말기 설계 단계부터 포용성 확보
 - ※ 설치·운영자와 제조·임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가능
 - **(접근성 품질인증)** 지능정보제품·서비스가 누구에게나 불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접근성 품질인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접근성에 대한 기본권 보장
 - **(우선구매 활성화)** 국가가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접근성 보장 제품의 시장 확산을 도모

〈표 19〉 「디지털포용법」(’26.1.22. 시행)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지털포용법」

■ 디지털포용 관점에서 본 관련 주요 법률

- 디지털포용을 둘러싼 법체계는 성격이 다른 여러 법률*이 포용적 관점에서 함께 논의되며, 각 법률은 정책 추진, 권리 보장, 복지 지원, 국가 비전 제시라는 상이한 기능을 분담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구성원이 차별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법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각각 장애인과 노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을 규정한 개별 법률
 - 이들 법률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전통적 디지털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다룬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 실현과 관련해 함께 언급되는 법률
 -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포용적 사회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국가적 방향을 제시하는 법으로, 디지털포용을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연결하는 맥락에서 연관성을 가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7.4.10., 제정, '08.4.11., 시행)

-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 **(포용적 관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의 금지와 시정, 권리구제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재화·용역 제공, 정보 접근,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일부 디지털 관련 조항을 포함
 -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무로 장애인보조기기의 설치·운영과 보조인의 배치를 의무화 (제11조제1항제6항, 제14조제1항제4조)
 - 특히, 상점이나 기관 등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동법 시행령으로 구체화

〈표 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5.11.11. 시행)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디지털포용법과의 비교)** 「디지털포용법」은 사회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와 민간의 책무를 다루는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 규율과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
 -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포용법」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법인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리 보호 중심의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차별 발생 시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과 권리 회복을 담당
 - 「디지털포용법」이 정책을 통한 사전 예방과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정명령, 손해배상, 과태료 등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 중심의 법률

■ 「노인복지법」(’81.6.5. 제정, ’81.6.5. 시행)

- **(목적)** 노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로, 복지 서비스 제공, 보호시설 운영, 학대 방지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기능을 수행
 -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제1조)
- **(포용적 관점)** 무인정보단말기의 확산에 따라, 재화·용역 제공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 존재

〈표 21〉 「노인복지법」(’26.1.24. 시행)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 **(디지털포용법과의 비교)** 「디지털포용법」은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아우르며,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돌봄, 여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담당
 - 「디지털포용법」은 전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정책 법률이고, 「노인복지법」은 ‘고령자’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복지서비스 제공 법률
 - 디지털의 측면에서는 일상 전반에 확산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조치를 따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2.1.4., 제정, ’02.7.5., 시행)

- **(목적)**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확립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2015)’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지방 정부의 책무를 명문화
- **(포용적 관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포용적 사회를 언급
 - *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제2조제4호)

〈표 2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2.7.5. 시행)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디지털포용법과의 비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24조에서 포용적 사회 구현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식량, 보건의료, 교육, 양성평등, 도시/주거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또는 정보화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음
 - 「디지털포용법」이 디지털포용을 ‘차별 없는 수혜적 환경 조성’으로 정의하는 반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공정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
 -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 다만, 두 법 모두 포용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모든 구성원’으로 설정

〈표 23〉 (요약) 디지털포용 관련 유사 법률 비교

법률명	「디지털포용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노인복지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시행일	2025.1.21., 제정 2026.1.22., 개정	2007.4.10., 제정 2008.4.11., 시행	1981.6.5., 제정 1981.6.5., 시행	2022.1.4., 제정 2002.7.5., 시행
법적 성격	정책 추진법	권리 보장법	복지 지원법	국가 비전 기본법
목적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포용 사회 구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노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접근 방식	사전 예방적 정책 설계	사후적 권리 구제	대상 중심 서비스 제공	가치·원칙 제시
대상 범위	사회 구성원(보편적)	장애인(특정 집단)	노인(특정 집단)	전 사회 (현 세대 + 미래 세대)
주요 수단	기본계획, 영향평가, 실태조사, 사업 추진	차별금지, 시정명령, 손해배상	복지서비스, 교육, 돌봄	국가 전략, 지표, 평가체계
디지털 분야 역할	접근성·역량·대체수단 등 정책 전반 설계	정보접근 차별 발생 시 구제	무인정보단말기의 보편적 활용	디지털포용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포괄
시간적 역할	사전(예방)	사후(구제)	상시(지원)	상위(방향 제시)
핵심 기능	디지털포용 증진 및 관련 산업 육성	권리 침해 방지 및 시정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

출처 : 저자 작성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 변화

1 (1980년대~2000년대)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정보격차 해소의 태동기



('80년대 ~ '90년대) 정보 인프라 확산

통신망 및 기기 보급 등 인프라 확충 중심의 국가 정보화 추진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에는 집중한 반면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에는 상대적으로 미흡

정보화 초기, 지역·기업·계층 간 인프라 격차 발생

- **(배경)** 1990년대 정보 인프라 보급 수준은 기본 통신서비스(전화)를 제외하면 서울과 지방간에 상당한 정보격차가 존재하였으며, 정보화 초기로 지역, 기업 간 격차 부각
 - **(90년대 정보격차 요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누구나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지만, 이동전화 가입자, 케이블TV 서비스 지역, 전용망 구축 등에 따른 정보격차 발생
 - **(지역 격차)**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인프라가 우선 공급되어, 서울과 지방 간 인프라 접근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정보화'가 이슈
 - * (지역 정보화 의미)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

〈표 24〉 지역별 PC통신망(천리안/하이텔) 가입자 분포 ('97.3 기준)

(단위 : %)

구분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청	전주·전북	원주·강원
천리안	62.3	13.0	8.1	5.2	6.0	2.4	3.0
하이텔	64.1	11.4	7.8	4.1	7.1	2.2	2.6

출처 : 한국전산원, 1997 국가정보화백서(데이콤, 한국PC통신)

- **(기업 격차)** 대기업은 정보유통 체계를 활발히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활용에 적극적인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보네트워크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정보 획득 및 개발 능력 취약
- **(계층 격차)** 1999년 4대 PC통신 전체 가입자 중 여성 비중은 22~32%, 50대 이상 가입자는 5%, 전체 장애인의 3.16%만이 PC통신을 이용하는 등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이 정보 취약계층으로 꼽힘

〈표 25〉 PC통신 가입자 연령별 분포 ('99.3 기준)

(단위 : %)

구분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초고
20~29세	41.1	41.7	47.6	49.2	45.1
60세 이상	0.5	1.7	0.6	0.5	0.4

출처 : 한국전산원, 1999 국가정보화백서(국내 각 통신사) 발채

I 정보접근 인프라(통신망·기기·비용 등) 중심의 지원 확대

- 정보화 초기 단계에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 지원은 1) 통신망 접근성 확대, 2) 정보통신제품 개발 및 보급, 3) 이용 비용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
- **(사랑의 그린 PC 사업)** 정부와 지자체는 정보통신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중고 컴퓨터(PC) 무상 지원('97~'20년, 국비지원 종료)
 - 정부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 중고 PC 347,673개를 보급⁴⁾하여, 정보취약계층의 PC 보급률을 2004년 대비 18.5%p 향상시키는 등 정보격차해소에 크게 기여⁵⁾
 - * 정보취약계층 가구 PC 보유율 : 48.7%('04년) → 67.2%('10년) (자료 :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 **(위성방송 수신기 보급 사업)** 1998년, 정보통신부는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성방송 수신기 총 1,493대(국내 1,417대)를 무료로 설치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특수학교, 소년원 등 위성 교육 방송 활용도가 높은 곳과 산간도서, 벽지, 마을회관 등 난시청 해소 지역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보급
- **(정보기기 개발 본격화)** 199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용 정보화 보조기기가 개발이 국내에서 시작하였으며, 1999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윈도우용 화면읽기 프로그램인 '소리눈 98' 개발
-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 단체 통화료 감면, 개인용 컴퓨터(PC) 보급,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 다양화 등 정보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표 26〉 정보통신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기	정책 내용
'89.7.1 시행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게 무료전화 제공
'93.6.1 시행	• 생활보호대상자 무료전화보급, 설비비·장치비 면제 • 장애인 요금할인제도
'93.4 시행	• 장애인 PC통신요금 50% 할인(하이텔) • 농어촌지역(3~6급지) 가입전화 기본료 인하 • 장애인용 공중전화부스 설치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하이텔 단말기 보급

출처 : 한국전산원, 1996 국가정보화백서 가공

4) 한국정보화진흥원('20), 2020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11.03.), 사랑의 그린PC' 보급을 통한 따뜻한 IT 문화 확산



('80년대 후반 시작, '90년대 본격 시행) 정보 문화 확산 운동

정보 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국가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보 문화 홍보 및 계몽 중심의 사업 전개,
인프라 중심의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I 급속한 정보화 속, 전산기기 활용 역량 강화 필요성 부각

-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조기 실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한편, 빠른 정보화 속도와 높은 지역 통신 요금 등으로 지역·계층 간 격차 발생
 - 전 국민이 전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정보화 진전에 따른 국민적 수용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컴퓨터 교실 확대,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완화 등의 필요성 증대
 - 정보격차 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88년 1월 한국정보문화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통신사업자·연구기관·산업체 등 정보통신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민간 주도로 본격 추진

정보화 지역격차 심하다

이동전화·팩스 등 60% 수도권편중

전화 P C통신 이동전화 무선호출 전용화선 케이블 T V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있어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정보화의 지역격차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문화센터가 최근 발표한 「지역정보화 정책 및 사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음성 데이터 등 전용화선 이용현황은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지역이 전체 3천 8백26회선 가운데 50.1%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 전체가입자 1백만명 가운데 수도권에 56만여명이 몰려있고 무선호출(팩스)은 5백만 가입자중 6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통화불량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방영되는 케이블 T V 도 서울과 대도시 위주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전체 케이블 T V의 41% (21개사)가 서울에 있는등 80%가 대도시에 설립되어 있다.

이에따른 뉴스 음악 교양 스포츠 등 프로그램공급자 26개사는 모두 서울에 몰려있다.

P C통신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업체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고 서비스 범위도 수도권에 한정된 것이 많아 정보화의 지역간 격차가 전화등 기간통신분야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도시와 지방간의 경제격차에 이어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불균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정보문화센터 崔斗鎭조사연구팀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정보화를 종합추진하는 계획이 없고 관련부처간 정보교류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동아일보('95.2.6)

- (목적) 정부, 공공기관·단체 등이 국민의 정보화 인식을 높이고 정보통신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며, 정보사회에 적합한 사회문화적 의식과 규범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사회운동
 - ※ 정보 문화 확산은 최단기간 내 최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표 27〉 정보문화 확산 운동의 범주

차 원	범 주	
의식·문화	정보화 마인드 확산	정보화의 사회적 합의 도출
행동 규범	정보 활용 능력	정보화의 사회적 합의 도출
	정보기기 활용 능력(미디어 리터러시) 배양	
사회 제도	정보화 수요의 창출	정보화 추진 전문인력 양성
	지역균형적 정보화 추진	정보화 법률적 기반 확립

출처 :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I 대규모 전시·캠페인·교육을 통한 정보화 필요성 및 편익 강조

- **(정보 문화 홍보)** 정부는 정보화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1998년 '정보 문화의 달(6월)'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범국민적 정보 문화 축제로 확산
 - '92년에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 고위 관료들이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정보문화홍보관 등에 참여할 정도로 정보 문화의 사회적 중요도 상승
 - ※ (정보문화의 달 행사 규모(기관수, 인원수))
('88년) 11개, 10만명 → ('92년) 31개, 69만명
 - 홍보물 제작·배포 및 캠페인 활동, 정보 문화 관련 전시회, 강연회, 학술공모 행사 등을 통해 정보사회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보통신기기 이용을 지속 홍보하는 '계몽' 활동 진행



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매일경제('88.6.2)

〈표 28〉 수요자별 정보문화 확산 전략 및 목표

대상	전략	목표
전문가 집단	홍보 및 전문교육	정보문화 생활화, 정보문화 확산 선도
일반집단	교육(리터러시)	정보이용 능력 함양
계도집단	계몽	정보화 의식 및 인식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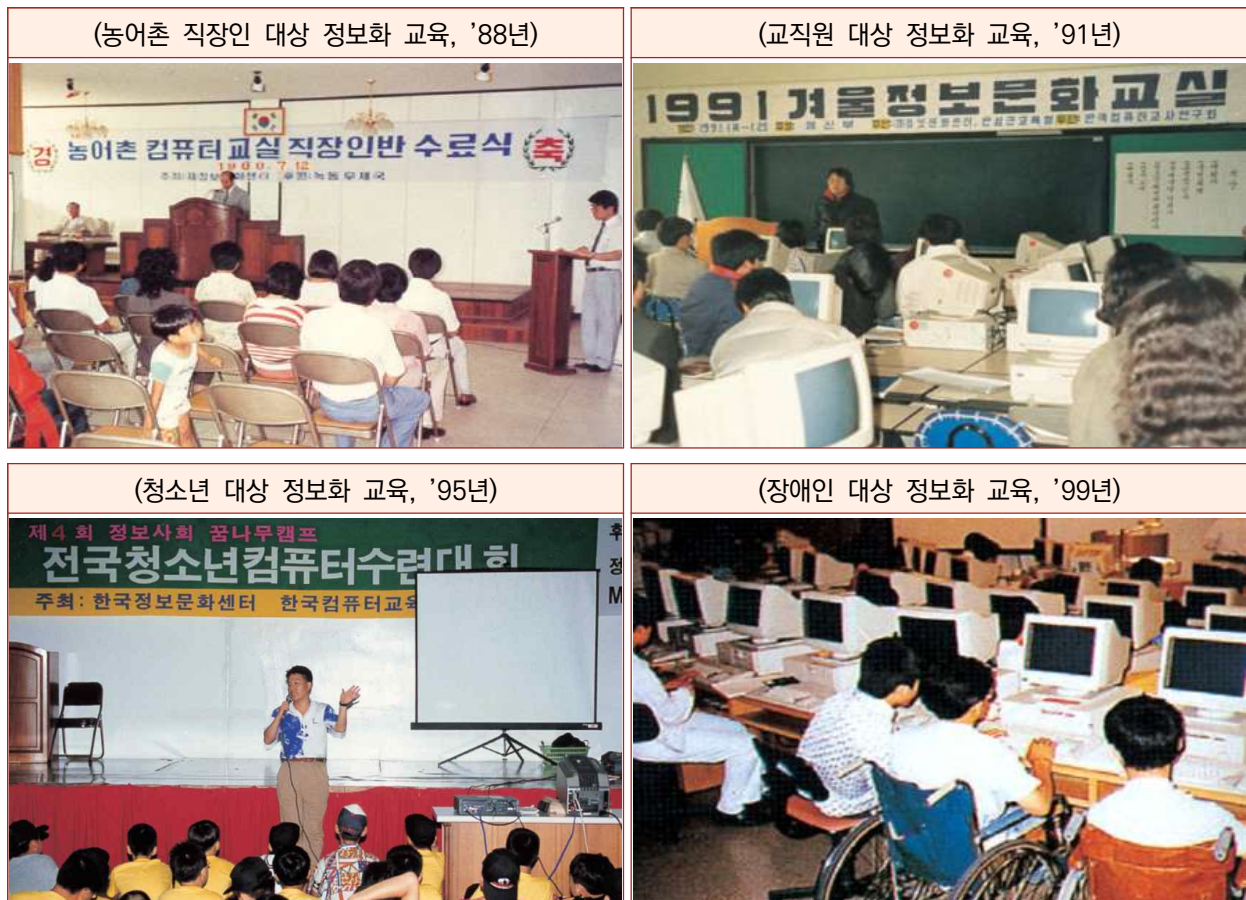
출처 : 한국전산원, 1997 국가정보화백서

- **(정보격차 해소)** '88년에서 '90년 중반은 지역과 기업 간 격차가 부각되어, 도시-농촌, 대-중소기업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교실, 전국 순회강연 등 사업 추진
 - ※ (전 국민 교육 언급) '99년,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통신 중점 추진과제'에서, 전 국민 대상 계층별 정보화 교육 시행에 관한 내용 포함
 - **(농어촌 컴퓨터 교실)** 농어민,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인식과 컴퓨터 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제공(1개월 과정)하였으며, 총 136개소 운영 ('99.5월 기준, '99.6월 사업 종료)
 - ▶ 우체국 유허 공간에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모뎀, 시청각 기기 등을 설치해 MS-DOS, 워드프로세서 등 PC패키지 실습과 PC이동통신을 이용한 기초교육 실시(수강료, 교재비 등 무료)



- **(지역정보화추진 협의회)** '91년 6월, 8개 지역별 '지역정보화추진 협의회'를 결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사업 발굴, 지역 주민 대상 홍보 및 계몽운동 전개
 - ▶ 지역정보화추진 협의회는 지역 정보화 실태조사, 세미나·강연회 실시, 정책연구, 해외 우수 정보화 추진 지역 시찰 등 지역의 정보화 자립을 위한 활동 추진
- **(장애인 정보화 교육)** 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42개 장애인 관련 기관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여 장애인 대상 컴퓨터 교육 시행 ('99년)
- **(정보화교육 강사 지원단)**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과 기업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주민, 학교 등에서 컴퓨터 교육 실시
 - ※ (지원단 규모) 48개 기업, 40개 대학 참여 → 164개 학교 3,518명, 147개 시설 2,015명 교육('98년 기준)
- **(기업 정보화 격차 해소)**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도입·구축·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 자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산전문 지도요원'을 파견하고, 필요시 정부에서 자금 지원

〈그림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계층별 정보화 교육 확산



출처 : 디지털 포용 공식 홈페이지(www.디지털포용.kr)



('00년~'09년) 정보격차 해소 사업

급속한 정보화와 기기 보급 확산으로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가

소득·복지 격차로 이어지는 '2단계 정보격차' 발생

→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추진

정보격차 심화와 2단계 정보격차 발생

-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활용 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 (2001년 국가정보화백서)
 - ※ '정보격차' 문제는 2000년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국제적 정책의제로 채택 (2001 국가정보화백서)
- 우리나라는 정보화 성숙기에 접어들며 정보기기 보급과 인프라 구축 수준의 향상으로 정보 접근 격차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정보 활용 역량의 격차는 완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 (이유) 접근성 분야의 수준 제고는 접근 환경 조성에 그치지만 역량 활용 부문은 비이용자를 이용자로 전환하고 활용 능력과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⁶⁾
- 2000년 후반에는 정보격차가 단순한 정보 접근 문제를 넘어,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가 소득·복지 격차로 이어지는 '2단계 정보격차' 문제로 심화 (2007년 국가정보화백서)
- '1,000만 명 정보화 교육('00.6월)', '제2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05.12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전담기관(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설치('02년) 등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

〈표 29〉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 간 부문별 정보격차 지수

(단위 : 점)

구 분	연 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평균
종합	2004년	42.5	44.4	66.2	59.1	55.0
	2007년	24.0	24.5	45.4	37.4	34.1
	감소폭	18.5 ↓	19.9 ↓	20.8 ↓	21.7 ↓	20.9 ↓
접근	2004년	27.0	38.9	48.7	33.7	36.3
	2007년	11.2	15.8	23.3	9.9	13.5
	감소폭	15.8 ↓	23.1 ↓	25.4 ↓	23.8 ↓	22.8 ↓
역량	2004년	58.9	50.1	81.7	82.3	72.5
	2007년	36.6	32.4	69.5	66.3	55.5
	감소폭	22.3 ↓	17.7 ↓	12.2 ↓	16.0 ↓	17.0 ↓

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2008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자료집

6) 한국정보문화진흥원('09.02.), 2008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자료집

I 부처별 정보취약계층 지원 강화 ... 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화 교육 확대

- **(인프라 고도화)** 정보취약계층의 PC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등이 점차 높아지면서*, 단순 인프라 보급을 넘어 인프라와 정보 서비스의 종합적 제공 및 활용과 체계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실시
 - * 취약계층 가구 컴퓨터 보유율 평균(격차) : '02년 40.6%(37.9%p) → '06년 60.1%(19.5%p)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평균(격차) : '02년 14.1%(45.3%p) → '06년 35.1%(39.7%p)⁷⁾
 - **(정보화 마을 구축)** 농어촌 주민의 일상에서의 정보 생활화를 촉진하고, 지역·계층·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균등한 정보화 혜택을 누리도록 구축('02년~, 누적 304개, '06년 4월 기준)
 - **(웹 접근성 보장)** 장애인·노인 등이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관계없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표준 및 인증제도 도입
 - ※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대책'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06.5월), 웹 접근성 준수가 정부 업무 평가지표에 반영되는 등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가 신규 정책 영역으로 부상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음성 통화를 할 수 없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TRS)* 시범서비스('05년~) 실시
 - * 장애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수화 통역사에게 문자나 수화 영상으로 전달하면 수화 통역사가 그 메시지를 통화 상대방에게 실시간 중계(통역) 해주는 서비스
- **(정보화 교육 지원)** 2000년대 정보화 교육은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보 접근 지원을 넘어 활용 촉진을 위한 콘텐츠 제공과 생산적 활용 교육까지 확대
 - **(정보취약계층 대상 집중 교육)** 2000년대 정보취약계층으로는 장애인, 주부, 농어민, 노인, 저소득층, 재소자 등이 꼽혔으며, 개별 부처가 소관 계층별 정보화 교육 추진
 - ※ 2000년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추진한 결과 1999년 10월,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이 14.8%에서 2001년 말 50.2%로 비약적으로 증가
 - **(맞춤형 콘텐츠 제공)** “생활밀착형 교육과정”과 함께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전업주부,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계층별 맞춤 과정’을 개발하여 정보화 교육에 활용
 - ※ (공통분야) 교통시설정보, 편의시설정보, 법령/시책정보, (장애인 분야) 장애 자가진단 정보, 장애인 주택 시설정보, 영화/도서정보 (노인분야) 치매 정보, 평생교육 정보, 실버용품 정보 등
 - **(전문교육 확대)** 정보화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교육 실시
 - ※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 교육(웹서비스 (자바) 전문가 과정,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 과정 등), 저소득 청소년 대상 웹 디자인, 자바 프로그래밍 등 전문 SW 실시

7)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07.1.), 2006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자료집

〈참고 1〉 부처별 정보격차 해소사업 시행계획(2003)

(단위 : 억 원)

담당 부처	사업명	예산	담당 부처	사업명	예산
교육인적 자원부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5만 명) • 교원정보화연수(113,000명)	133 30	경찰청	• 전·의경 정보화교육(4.8만 명)	1
외교통상부	•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봉사단 파견 등)	172	중소 기업청	•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교육 • 중소기업 밀집지역 정보화기반 구축 • 조합 정보화 기반 구축	11 30 28
법무부	• 보호소년·재소자 정보화교육 지원 (44개 교육장 증설, 43,300명 교육)	49	정보 통신부	• 정보화 인프라 소외지역 초고속정보 통신망 구축 지원	680
국방부	• 장병 정보화교육(15만 명)	-		• KT에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의무 부여 및 이행 확인	-
행정자치부	•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100여개 이상) • 주민 정보화교육 (기초 25만 명, 실용 25만 명)	430 260		• 정보이용시설 설치 지원	17
문화관광부	•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16		• 중고 PC 보급	16
농림부	• 농업 정보통신환경 조성	23		• 장애인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10
	• 농업인 정보화교육(6만 명)	27		• 노인 정보화 교육	10
	• 농촌 PC보내기 지원(4,500대)	4		• 장애인 정보화 교육	40
	•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6		• 우체국 교육장을 통한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28
	•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 확대 운영	10		• e-Korean 교육	60
	•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구축	1		•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315
	보건복지부	• 노인정보화교육(35,400명)		7	•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교육
• 장애인 정보화교육(4만명)		13		• 주부 e-Biz 교육	62
노동부	• 근로자 등 정보화 훈련(재직자 20만 명, 고학력 미취업자 1.5만 명, 근로자 및 영세민 10.3만 명)	658		•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활성화	6
	•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9		•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 구성·운영	12
	• 장애인 정보화 훈련(약 2만 명)	280		• 장애인·노인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6
여성부	• 사이버 여성 IT 전문교육·훈련	10		•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특별협력 사업	7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2		• 월드뱅크 정보격차 해소 지원	18
해양수산부	• 어업인 정보화교육 (실용 5천 명, 기초 5천 명, 어촌정보사랑방 250개소 구축 등)	26		• IT 인력초청 연수	8
				•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16
				• 차세대통신지도사 초청 교육	5
				• 해외 IT전문가 중장기 양성	26
				•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14
				• 해외 언론인 IT투어 프로그램	3
				• 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	2
				• 정보격차 해소 범국민운동 전개	0.5

출처 : 한국전산원, 2003 국가정보화백서



(’10년~) 인터넷중독(역기능) 대응과 범국민 정보윤리교육 실시

인터넷 이용 보편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증대되며,

법·제도로 규제하기 어려운 문화 정착과 정보 윤리 확산에 초점

→ 기술 위주의 정보화 정책에서 **정보 콘텐츠 개발·향유 중심의 문화적 차원**으로의 전환

I 인터넷 생활화, 스마트폰 확산으로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 발생

- **(배경)**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인터넷 이용 보편화로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 능력은 향상되었으나,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증대

* 2010년대 정보화 역기능 : 사이버범죄, 불건전 정보유통,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개인정보 유출 등

- 정보 습득, 대인커뮤니케이션, 경제활동 등 개인 차원의 인터넷 활용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인터넷 중독 증가

- 2010년대에는 인터넷 중독을 개인적 문제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사이버범죄, 가정파괴, 강도, 살인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 모니터링과 대응 강화

※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증가(’09년 2.6% → ’11년 2.9%(18만 7천 명))와 경제적·가정 환경적 요인 결합으로 새로운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 중독 문제 심화

- 스마트기기 이용 확대와 ICT 융복합 환경 변화로 일상에서 스마트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지며 중독 위험은 커지고 있으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 중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2012년 스마트폰 중독률 11.1%(전년 대비 2.7%p 증가), 인터넷 중독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79.1%, 스마트 미디어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69.1%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표 30〉 2010년대 인터넷 중독 현황과 사례

연도별 인터넷중독자 현황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사례																		
(단위 : 천 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인터넷중독자 현황 (천 명)</th> </tr> </thead> <tbody> <tr> <td>2004</td> <td>3,228</td> </tr> <tr> <td>2005</td> <td>2,862</td> </tr> <tr> <td>2006</td> <td>2,074</td> </tr> <tr> <td>2007</td> <td>2,042</td> </tr> <tr> <td>2008</td> <td>1,999</td> </tr> <tr> <td>2009</td> <td>1,913</td> </tr> <tr> <td>2010</td> <td>1,743</td> </tr> <tr> <td>2011</td> <td>2,339</td> </tr> </tbody> </table>	연도	인터넷중독자 현황 (천 명)	2004	3,228	2005	2,862	2006	2,074	2007	2,042	2008	1,999	2009	1,913	2010	1,743	2011	2,339	• 인터넷 게임중독 중학생 어머니 살해 후 자살(’10.11월) • 게임중독 어머니, 2세 아들 목 졸라 살해(’10.12월) • 게임중독 미명문대 중퇴자 길가는 행인 이유없이 살인(’11.7월) • 온라인게임 자금 마련 위해 자신의 아이 인신매매(’11.7월) • 게임중독된 가해학생이 괴롭히던 왕따 여중생 자살(’11.12월)
연도	인터넷중독자 현황 (천 명)																		
2004	3,228																		
2005	2,862																		
2006	2,074																		
2007	2,042																		
2008	1,999																		
2009	1,913																		
2010	1,743																		
2011	2,339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국가정보화백서

- 정보화 역기능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와 사회 전반의 정보문화 확립에도 직결되므로, 법·규제로 바로잡기 어려운 다양한 가치 일탈행위에 대한 교육·문화적 접근을 통한 규범 정립 필요성 강조

I 범정부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 200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으며, 관계 부처가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던 것을 2010년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학교 특강교육 강화,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추진, 전국 300여개 '인터넷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학교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교육 실시
 - **(인터넷 중독 상담 서비스)** 개인 상담(내방·사이버·전화) 및 학교 파견 집단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콜 운영
 - * (상담 현황) 200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93만여건 상담 진행(2014 국가정보화백서)
- 일상생활에서 정보 역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화 발전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사회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유아 시기부터 정보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 추진
 - **(정보 윤리교육)** 유아,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 대상별 특화 정보윤리교육을 실시('01년~) 하였으며, 교육 대상 확대(만 5세)와 신규 취약 대상을 발굴한 맞춤형 교육 실시('11년)
 - * 성인이 된 후 정보화를 접한 중·장년층, 정보화 이주민(Digital Immigration) 등 대상자 확대

〈표 31〉 과의존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

		
(예방)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센터 개소('02년) → 인터넷중독대응센터('11년), 스마트침센터로 명칭 변경('15년~)	(상담)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11년~), 찾아가는 스마트침센터, 스마트침 캠페인('14년) 등 실시	(인력 양성)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전문인력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사' 양성('02년~)
		
(교육) 대상별 맞춤형 정보윤리교육 실시('01년~)	(홍보·캠페인) 스마트침 캠페인, 민관 협력 프로젝트, 토크콘서트 등 진행	(콘텐츠 개발)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가이드라인, 중독예방콘텐츠(동영상, 웹툰 등) 등 개발·확산

사진 출처 : 디지털포용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digitalculture>) 참고 정리

3 (2020년대) 디지털포용 확산과 제도화

디지털 이용 환경과 질서 재정립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이 정착되며 무인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이용 수단**이 급증하고,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접근성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필요성 증대**
 → 정보화/디지털 격차와 차별화된 대상과 목표를 가진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 등장**

I 코로나19로 디지털·비대면 확산, 그에 따른 디지털 역기능 증대

- **(배경)**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 비대면 확산과 그에 따른 가정 내 고립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디지털 역기능(디지털 격차, 과의존 등)이 심화되고,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새로운 역기능 등장
 - **(디지털 선택이 아닌 필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통방식(온라인, 무인정보단말기 등)으로의 전환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편함을 넘어 생존과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
 - * 확진자 안내 정보, 약국별 마스크 보유량 확인, 무인정보단말기 활용 어려움에 따른 주문 불가 등
 - **(디지털 의존 및 위험 행동 증가)** 스마트폰 의존 시간이 증가하고, 청소년의 과의존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두드러졌으며('20년~'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사이버 폭력 등 일탈행위 지속 증가



출처 : 과기정통부('20.9.), 2020 4차산업혁명 지표

출처 :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디지털 역기능 다변화)** ICT 기술의 지능화·고도화·융합화로 디지털 역기능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딥페이크,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도 확산

〈표 32〉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역기능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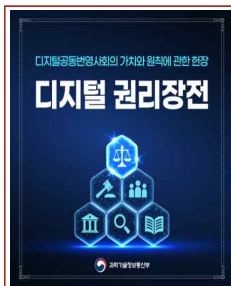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20년~2021년
현안	개인정보침해(CCTV, 비밀번호), 사이버 금융범죄(해킹, 악성코드), 불법촬영, 여론조작, 사이버성범죄, 사이버폭력, 과의존	개인정보침해(얼굴, 이미지), 사이버금융범죄(보이스피싱), 불법촬영, 사이버성범죄(n번방, 성착취), 허위정보(딥페이크, 가짜뉴스), 편향성(조작, 정확성)
대상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 서비스 이용자 + 개발자
공간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이용 과정	유튜브, 챗봇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과정
해결	역기능 예방·조치를 위한 법제도 및 교육	교육, 역기능 차단 기술 활용, 자율적 가이드라인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Digital Inclusion Report 3호]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대응을 위한 우리의 준비

I 디지털이 초래한 위험관리에서 신질서 설계로 정책 재편·사업 확산

- **(新 디지털 원칙 제시)** 2023년 9월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일상화에 따른 국가적 기준과 원칙을 담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
 - **(디지털 권리장전 의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을 통해 얻는 혜택을 어떠한 조건이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보편적 원칙과 가치 반영
 - * ‘디지털 권리장전’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를 알리고 정부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서’ 역할

〈표 33〉 디지털 권리장전 개요



- (제명)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 (구성) 배경·목적 등을 담은 전문과 본문(총 6장, 28개조)으로 구성
- (내용)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제시하고, 이를 위한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및 시민의 권리와 국가, 기업 등 주체별 책무 규정
- (함의)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디지털 접근성·리터러시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었고, 디지털 혁신과 국제 연대·협력을 통해 인류 전체 후생 증진 강조

- **(국내·외 디지털 질서 정립)**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규범과 원칙 정립을 위해 대국민 공론화 활동을 추진하고,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다자간 협력 추진
 - **(디지털 공론장 운영)**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는 플랫폼⁸⁾ 마련('23년~)
 - **(글로벌 협력 추진)** OECD와 함께 국제사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할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고(OECD DSI, 대한민국 의장국), 독일·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공동연구를 포함한 다자협력 추진('24년~)
- **(‘디지털배움터’ 중심의 역량 강화)** ‘디지털배움터’에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 약 99.6만 명('23년 기준) 디지털 역량 교육 이수
 - **(오프라인)** 상시 디지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디지털배움터(상설)’와 키오스크, 태블릿, AI 스피커 등을 활용해 학습하는 ‘디지털 체험존’을 통해 기초 역량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 제공
 - **(온라인)** 에뮬레이터 실습*을 통해 키오스크 활용, 인터넷 쇼핑, 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거래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진행
 - * 키오스크, 쇼핑 앱 등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모방해 만든 실습용 프로그램으로,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체험을 제공하고 반복 학습이 가능

8) ‘디지털 공론장’은 ‘디지털소사이어티(<https://digitalsociety.or.kr/pages/ai-digital-symposium>)’에 편입되어 운영 ('26.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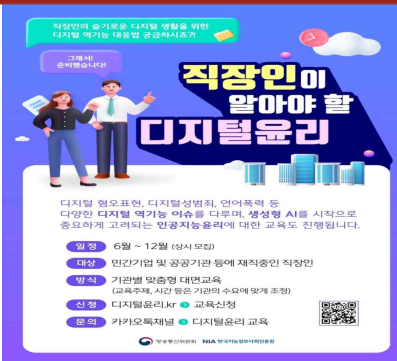
〈표 34〉 디지털배움터 추진 현황

오프라인		온라인	
상설 디지털배움터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에뮬레이터 실습	맞춤형 교육 콘텐츠
 시간·장소 제약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강의, 디지털 체험존, 헬스데스크 운영)	 경로당, 노인 교실, 장애인 복지관 등 전국 3,700곳 찾아가는 교육 실시	 실재감 있는 체험형 교육 (에뮬레이터)를 통해 실습 교육 지원	 기초·생활·심화·특별 등으로 나누어 개별 수준 및 수요에 맞는 교육콘텐츠 제공

출처 : 디지털배움터 공식홈페이지 발췌

- **(디지털 윤리교육 확대)**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디지털 윤리교육의 범위를 AI 윤리로 확장하고 교육방식 (디지털윤리 골든벨, 가족 캠프 등) 및 교육 대상(가족 단위, 직장인 등) 다양화
-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상담 강화)** 메타버스 기반 상담 등을 도입해 서비스 활용 대상(다문화가정, 고위험 청소년 등)을 확대하였으며, 과의존 예방 콘텐츠 다양화(총 46종, '23년 기준)

〈표 35〉 디지털·AI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 내용

교육 대상 확대	상담 서비스 개선	콘텐츠 확대 및 다양화
 유아·청소년 뿐만 아니라 직장인(AI 개발자 등), 가족 등 신규 교육 대상 확충	 대면 기피 고위험군 대상 메타버스 기반 상담 도입	 디지털 윤리(생성형 AI 등) 및 과의존 예방(숏폼, 유튜브 등 올바른 사용 방법 등) 콘텐츠 확산

이미지 출처 : 각계 언론사

- **(키오스크 UI 플랫폼 운영)** 제조·개발사가 보다 쉽게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보급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가이드' 및 플랫폼⁹⁾ 구축('24.3월~)
 - 무인정보단말기 UI/UX 다양성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휠체어 디자인, 음성·수어 지원을 반영한 키오스크 유형별 UI 템플릿(16종) 등 공통 가이드 제공

9)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kioskui.or.kr)

〈표 36〉 디지털 포용 기술 확산을 위한 주요 추진 내용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	무인정보단말기 UI 가이드	기업 컨설팅 및 민간 협업체 확대
 무인정보단말기의 UI(User Interface) 설계·개발·접근성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무인정보단말기의 효과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 제공	 이마트, 맥도날드 등 사용자가 많은 프랜차이즈 컨설팅('23년, 21회) 및 민간 협력체계 확대('23년 48개사 '24년 72개사)

출처 : 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

〈참고 2〉 디지털 시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왜 이슈인가?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KIOSK)란? - 이용자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기 • 급격한 확산과 소외 발생 -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다양한 분야·업종에서 사용 확대 -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전통적 디지털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용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무인정보단말기 누구나 편리하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접근성 기능(예. 점자, 수어, 높낮이 조절, 음성지원, 화면확대, 고대비 모드 등)을 지원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예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미지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점차 확대 중 - 전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총 1,814대('26.4.8 기준)이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민간에 설치된 키오스크 도입·운영·관련 현황 파악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도 * 서울 554대, 부산 110대, 대구 37대, 인천 27대, 광주 24대, 대전 65대, 울산 24대, 경기 298대, 강원 108대, 충북 41대, 충남 86대, 전북 84대, 전남 98대, 경북 106대, 경남 147대, 제주 5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현황 

출처 :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https://www.kioskui.or.kr/>)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미지 출처 : <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145>

I 1980~1990년대 : 정보화 기반 구축 (키워드 : 인프라 확충, 정보화 촉진, 보편적 서비스 시작)

- 정보화 자체가 목표였던 시기로, 국가기간전산망, 초고속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심이 되었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통해 국가적 정보화 확산의 법적 기반 마련
 - 이때 등장한 중요한 개념이 '정보통신서비스의 보편성'으로, 지역·경제적 격차 중심의 제한적인 개념이지만, 이후 '디지털포용'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짐
 - 다만, 디지털포용 관점에서 정책은 "정보화에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에 집중되었고, 이용 역량이나 사회적 영향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시기

I 2000년대 : 정보격차 해소의 제도화 (키워드 : 정보격차, 취약계층, 접근+역량, 2단계 격차)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보격차가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본격 등장하였으며, 단순 접근 격차를 넘어 활용 능력 격차(2단계 정보격차)까지 정책의 범주 확장
 - PC 보급, 통신요금 지원 사업으로 (정보화)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초적인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정책 대상별 역량 강화를 꾀하였으며, '정보 소외계층'을 정의하여 정책 목표 대상을 구체화
 -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포용 관점에서의 정책 구조는 국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후견적이고 시혜적 성격이 강하며, "누가 부족한가"를 기준으로 정책 설계

I 2010년대 : 정보화 역기능 대응 (키워드 : 인터넷 중독, 정보 윤리, 안전·신뢰, 규범 형성)

-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 중독 대응, 사이버 범죄, 정보윤리 교육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정보화 부작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
- 이 시대의 정책은 정보화 역기능 관리 중심의 접근으로 급격한 정보화 확산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역기능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

I 2020년대 : 디지털포용 확산 및 권리화 (키워드 : 디지털포용, 사회 구성원, 권리, 환경 설계)

-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을 거치며 정책 대상은 디지털 취약계층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되고, 접근 중심에서 역량·환경을 포괄한 기본 권리의 개념으로 심화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 변화
- AI 탑재 서비스·제품, 키오스크,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환경 설계의 문제라는 인식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 교육도 사회 전반에서 병행·확대
- 또한, 디지털포용 정책은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디지털 배제를 예방하는 사전 설계 중심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 발생

I 앞으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 **(디지털포용, 권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신규 취약계층의 등장에 대응하여 기존 장애인·고령자 등 특정 대상 중심 정책에서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
 -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포용법」 제정은 대상 중심 정책에서 권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방향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계기

〈표 37〉 그간의 법률로 본 디지털포용 정책 패러다임 변화

구분	이전 정보화 관련 법률	「디지털포용법」
디지털포용 정책 대상	특정 계층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인터넷 이용자(인터넷 중독 대응 관련))	사회 모든 구성원
디지털포용 정책 목적	디지털 접근성 보장 (디지털 정보 및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기술 혜택의 공정한 향유 보장 (지능정보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 조성)
정책 추진 범위	특정 분야 지원 사업·프로그램 중심 • 보조기기 보급 • 웹·앱·무인정보단말기 등 접근성 확보 •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지원 등	제도 기반의 종합 정책 체계로 확대 • 대체수단 제공(노력 의무) • 체계적 정책 수립(기본·시행계획 수립)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수행 • 디지털역량 교육 지원 • 웹·앱·무인정보단말기 등 접근성 확보 등

출처 : 저자 작성

-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필요)** 그간 정책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확산된 이후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기술 발전 속도와 서비스 확산 범위를 고려할 때 한계 존재
 - 기술·서비스 확산 이후 제도 마련으로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과 차별이 지속되고, 기술·서비스 설계 완료 이후에는 근본적 개선이 어려우며, 기술 확산 속도를 정책 대응이 따라가기 어려운 한계 존재
 - 사후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포용적 서비스 설계 기준,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기반 서비스 설계 등을 통해 기술 개발·도입 단계에서부터 포용성을 고려하는 정책 접근 필요
 - 특히,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포용의 내재화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 사전 예방 체계 전환의 출발점
 - ※ 법적 근거 : 「디지털포용법」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 공공조달 연계, 평가 결과 환류 체계 및 데이터 기반 점검 체계 등을 마련하여 일상에서 디지털포용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의 정교한 설계 필요
 -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요소(AI 편향, 플랫폼 의존 등)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 위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실질적 정책 대응 수단을 통한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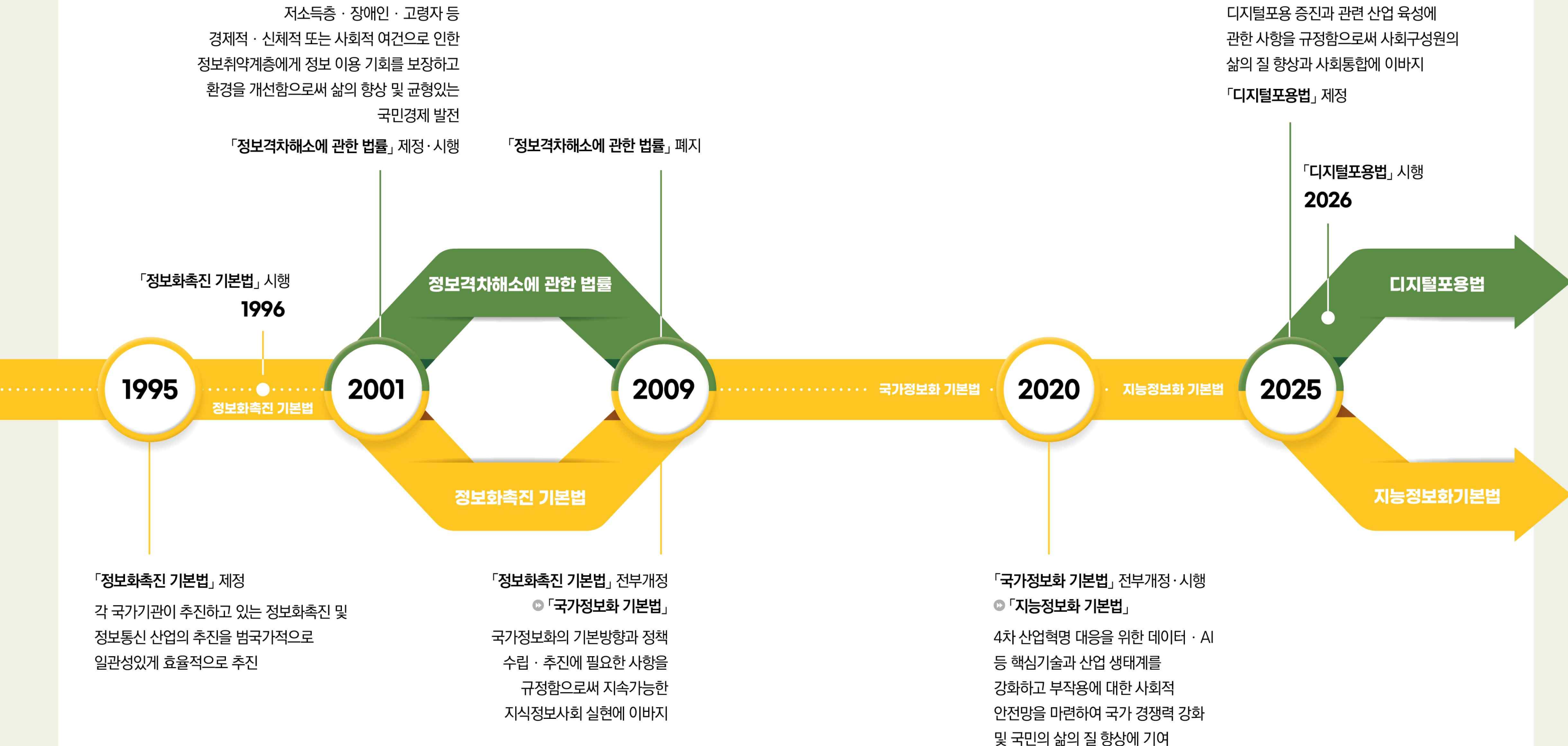
- **(민간·시장 참여 확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민간 플랫폼·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부 중심 정책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 협력 구조 구축 필요
 - 플랫폼 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 민간이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공공 정책과 민간 서비스 간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기존에는 디지털포용이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공공 정책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향후에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 필요
 - 접근성 품질인증, 공공조달 우선구매,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포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확산 촉진 필요
 - 또한,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협의 채널의 확대 필요
 - 정부는 제도·표준·인센티브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포용적 기술·서비스 개발과 현장 적용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추진 체계로의 전환 기대
 - ※ 법적 근거 : 「디지털포용법」 제26조(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
-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운영)**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구조 구축 필요
 -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정책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디지털포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취약 요인과 포용 정책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 체계 정비 및 확장 필요
 -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 설계 및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체계 강화 필요
 -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취약 요인과 이용 행태 변화, 포용 기술 및 서비스 확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 모니터링과 점검 체계 구축 필요
- **(기술 변화 대응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됨에 따라, 정책 지원 역시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 체계로 전환 필요
 - 이에 따라 기본계획·시행계획 중심의 주기적 정책 수립 체계와 함께, 기술 변화에 대응한 상시적 제도 개선, 시범사업 및 실증 기반 정책 보완 등 유연한 정책 운영 체계 구축 필요
 - 또한, 디지털포용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정책 기획,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기술·서비스 검증, 성과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
 - ※ 법적 근거 : 「디지털포용법」 제13조(전문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지정('26.3.17.)
 -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정책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기반의 강화 필요



디지털포용 법률 및 사업 연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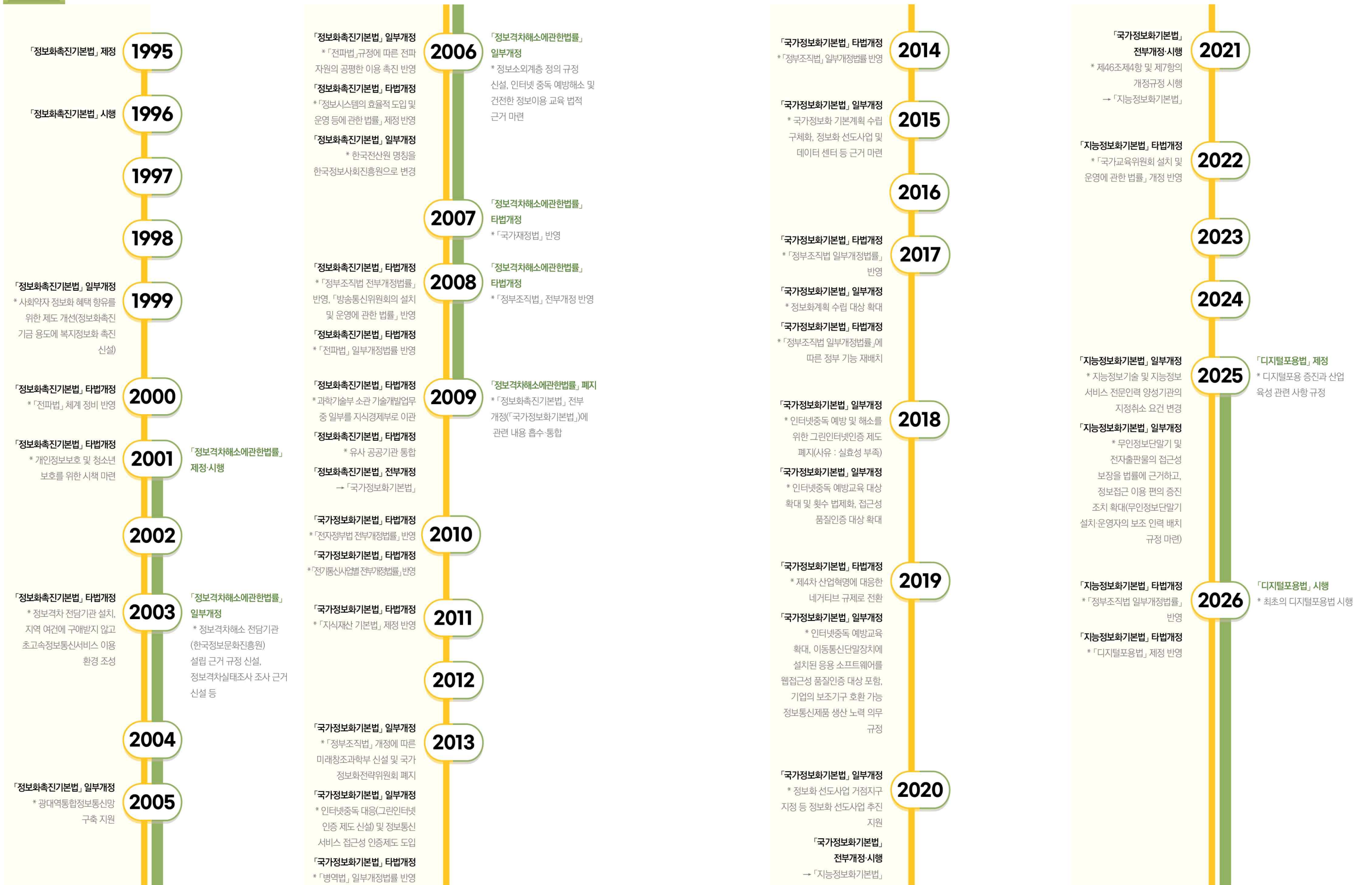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법·정책	●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 ('96.1.1.)				● 1000만 명 정보화교육추진계획 수립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 ('01.4.17.)
지원사업		●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 시작	● 주민 컴퓨터 교실 운영 ● 여성 정보화 교육 실시 ● 군장병 정보화교육 실시	● 우체국 정보화교육 실시 ●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시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시작	● 중소기업인 · 어업인 · 농업인 · 교육 · 장애인 등에게 정보화 교육 실시('배움나라') ●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시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법·정책	● 국민정보화교육 실시	●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전국 확대 실시 ● 노인 · 장애인 ·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실시(52만명) ● 북한 이탈주민 대상 IT전문교육 실시	● IT기반 중소기업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 개발 지원	● 107 손말이음센터 개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RS) 시범서비스 실시)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국가 표준 제정		● 정보통신부, 어린이용 윤리 교과서 보급
지원사업	●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시작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시작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법·정책	● 정부조직 개편 (정보통신부 폐지, 정보화 관련 업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리 이관)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09.8.23.)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 개정)				
지원사업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제정	●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개소 ● 인터넷 중독방지 '그린인터넷' 인증제 도입	●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시작	● 웹 접근성 국가표준을 준수한 우수 웹 사이트 대상 품질인증마크 부여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정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2.1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 ● '디지털포용 추진계획' 의결		● 접근성 보장 우선구매제도 시행	●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지원사업	●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시작	● 제1회 '한국코드페어'(청소년 소프트웨어 행사) 실시	● '디지털배움터' 운영	● 디지털 역기능 대응 통합안내시스템 서비스(gooddigital.or.kr) 개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윤리교육 콘텐츠 개발('21년 14종)	● '디지털 활용 현안 해결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배움터 교육 콘텐츠 개발 (수준·계층·역량별 특성 고려)	● '디지털 신질서 협의회', '디지털 소사이어티' 신설(사회적 담론 형성)
연도	2024	2025	2026			
법·정책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발표		● 「디지털포용법」 시행 ('26.1.22.)			
지원사업	● AI·디지털 규범 공동연구 ●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 디지털포용 제품·서비스 실증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센터 운영(신속한 검증 지원) ● 국민 AI기본역량 체계 마련	● 디지털포용 산업 체계 마련,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추진 ● AI 디지털배움터 운영			

출처 : 국가지능정보화백서(1993~2024)를 바탕으로 저자 추가·가공



참고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 제·개정 이력('95년~'26.3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저자 가공



- **(정보화 법률)** '96년 「정보화촉진 기본법」에서 시작해 총 38번의 제·개정('26.3.23 기준)을 거쳐, 현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중
- **(디지털포용 법률)** '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로 출발해 이후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흡수되었으며, '26년 「디지털포용법」으로 독립된 단일 법률로 제정

법률명	연혁	제·개정 주요내용	제·개정 사유의 디지털포용 관련 여부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69호, 1995. 8. 4., 제정]	정보촉진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지원	
	[시행 1999. 7. 1.] [법률 제5669호, 1999. 1. 21., 일부개정]	정보화책임관 의무 구체화, 사회약자의 정보화 혜택 향유를 위한 제도 개선(정보화 촉진기금 용도에 복지정보화 촉진 신설)	○ (접근성 확대)
	[시행 2000. 4. 1.] [법률 제6197호, 2000. 1. 21., 타법개정]	전파자원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한 「전파법」 체계 정비 반영	
	[시행 2001. 7. 1.] [법률 제6360호, 2001. 1. 16., 타법개정]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상 음란, 폭력물로 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 법 제명 변경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역기능 대응)
	[시행 2003. 1. 1.] [법률 제6795호, 2002. 12. 18., 타법개정]	정보격차 전담기관 설치, 지역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 (접근성 확대)
	[시행 2005. 1. 1.] [법률 제7265호, 2004. 12. 30., 일부개정]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시행 2006. 7. 1.] [법률 제7814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전파법」 규정에 따른 전파자원의 공평한 이용 촉진 반영	
	[시행 2006. 7. 1.] [법률 제7816호, 2005. 12. 30., 타법개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반영(정보 시스템 효율적 구성을 위한 정보아키텍처 활용 촉진,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확립)	
	[시행 2006. 10. 4.] [법률 제8031호, 2006. 10. 4., 일부개정]	한국전산원 명칭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총괄기구 설립(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부처 신설 및 폐지 반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기능 통합(방 송통신위원회 설치) 반영	

법률명	연혁	제·개정 주요내용	제·개정 사유의 디지털포용 관련 여부
	[시행 2008. 12. 14.] [법률 제9128호, 2008. 6. 13., 타법개정]	「전파법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주파수 할 당제도 정비 반영 및 법제문의 쉬운 정비	
	[시행 2009. 5. 1.] [법률 제9369호, 2009. 1. 30., 타법개정]	과학기술부 소관 기술개발업무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 법제문의 쉬운정비	
	[시행 2009. 7. 23.] [법률 제9637호, 2009. 4. 22., 타법개정]	유사 공공기관 통합을 통한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09. 8. 23.] [법률 제9705호, 2009. 5. 22., 전부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 개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전자 정부 관련 기능 통합 반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법제문의 쉬운 정비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식재산 가치 발휘를 위한 기반 조성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88호, 2013. 3. 23.,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반영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64호, 2013. 5. 22., 일부개정]	인터넷중독 대응(그린인터넷인증 제도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인증제도 도입	○ (인터넷)역기능대응, 접근성확대)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타법개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공익근무 요원 관련 내용 반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부처 명칭 변경 및 교육, 사회, 문화 부총리 신설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40호, 2015. 6. 22., 일부개정]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체화, 정보화 선도사업 및 데이터 센터 등 근거 마련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부 기능 재배치 반영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72호, 2017. 3. 14., 일부개정]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 확대	

법률명	연혁	제·개정 주요내용	제·개정 사유의 디지털포용 관련 여부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부 기능 재배치	
	[시행 2018. 1. 25.] [법률 제1490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그린 인터넷인증 제도 폐지(실효성 부족, 신청 건수 연평균 3건)	○ (인터넷)역기능 대응)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69호, 2018. 2. 21., 일부개정]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확대(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대상 확대 및 횡수 법제화, 결과 점검 연례화),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 확대(앱의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으로 확대, 기업의 보조기구 호환 정보통신제품 생산 노력 의무 부과) 등 정보접근성 보장 확대	○ (인터넷)역기능 대응, 접근성 확대)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타법개정]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369호, 2018. 2. 21., 일부개정]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확대(교육횟수 추가, 의무대상에 어린이집 추가),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웹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 기업의 보조기구 호환 기능 정보통신제품 생산 노력의무 규정	○ (인터넷)역기능대응, 접근성확대)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49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등 정보화 선도사업 추진 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 부칙 제1조에 의거 법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만, 제46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	○ (정보격차해소, 접근성 이용보장 등 디지털포용 전반에 대한 내용 반영)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 제46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 시행	○ (정보격차해소, 접근성 이용보장 등 디지털포용 전반에 대한 내용 반영)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반영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31호, 2025. 1. 31., 일부개정]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변경	
	[시행 2025. 3. 27.] [법률 제20410호, 2024. 3. 26., 일부개정]	무인정보단말기 및 전자출판물의 접근성 보장을 법률에서 정하고, 정보접근 이용 편의 증진 조치 확대(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의 보조인력 배치 규정 마련)	○ (접근성 확대)

법률명	연혁	제·개정 주요내용	제·개정 사유의 디지털포용 관련 여부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부 조직 체계 재설계 반영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타법개정]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 2001. 4. 17.] [법률 제6356 호, 2001. 1. 16., 제정]	정보이용에 취약한 자들에게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이용 환경 조성	○ (최초의 정보격차해소 를 위한 법률)
	[시행 2003. 1. 1.] [법률 제6795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정보격차해소 전담기관(한국정보문화 진흥원) 설립근거 규정 신설, 정보격차실태 조사 조사 근거 신설 등	○ (정보격차해소 전담기 관 신설 및 초고속정보 통신서비스이용 여건 조 성을 위한 규정 신설)
	[시행 2006. 12. 31.] [법률 제7811 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정보소외계층 정의 규정 신설 및 한국정보 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및 건전한 정보이용 교육 법적 근거 마련	○ (정보격차해소 전담기 관 신설 및 초고속정보 통신서비스이용 여건 조 성을 위한 규정 신설)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 호, 2008. 2. 29.,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하여 기획 재정부 신설)	
	[시행 2009. 8. 23.] [법률 제9705호, 2009. 5. 22., 타법폐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 개정(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관련 내용 흡수 통합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정]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 (최초의 디지털포용법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저자 가공

I 해외 자료 및 웹사이트

- AU, Digital Inclusion Standard
(<https://www.digital.gov.au/policy/digital-experience/digital-inclusion-standard>)
- EU, Digital Compass 2030
(<https://eufordigital.eu/library/2030-digital-compass-the-european-way-for-the-digital-decade/>)
- Good Things Australia('24.10), The Economic Benefits of Overcoming Digital Exclusion
- OECD, Going Digital (<https://www.oecd.org/en/about/projects/going-digital.html>)
- SG, Digital for Life (<https://www.digitalforlife.gov.sg/>)

I 국내 자료 및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계부처 합동('16.12.),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
- 디지털배움터 공식홈페이지 (<https://www.디지털배움터.kr>)
-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www.kioskui.or.kr/>)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993 국가정보화백서 ~ 2024 국가지능정보화백서
(https://nia.or.kr/site/nia_kor/ex/bbs/List.do?cbldx=44086)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https://nia.or.kr/site/nia_kor/ex/bbs/List.do?cbldx=81623)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1.8),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대응을 위한 우리의 준비 - 전 국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의 중요성 -
- 한국정보문화진흥원('09.2),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자료집
- 한국정보문화진흥원('07.1.), 2006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자료집
- 한국언론진흥재단('25.11.), '생성형 AI활용 격차와 AI 리터러시'